주요국의 조세동향

2012년 제1호

2012. 6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연구원

이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 차

제 1 부 주요 이슈별 조세동향

Ⅰ EU 회원국의 조세수입 및 세제개혁(EU 보고서) ·· 13

1. EU의 조세구조 ····13
2. 금융위기 이후 EU 회원국의 세제개혁 ····15
3. 금융위기 관련 조세정책 ····17
   - 가. 자본조달비용과 조세정책 ····18
   - 나. 부동산시장과 조세정책 ····19
   - 다. 금융기관 임원보수와 조세정책 ····21

Ⅱ 조세행정에서의 성과관리(IMF 보고서) ····· 22

1. 조세행정의 전략 단계(strategic level)에서 성과관리 ····23
2. 조세행정의 운용 단계(operational level)에서 성과관리 ····24
3. 조세행정의 인적 단계(individual staff member level)에서 성과관리 ···26
4. 성과관리 시스템에서 주요 과업(key tasks)은 무엇인가? ····27
5. 다른 국가의 성과관리 ····28
   - 가. 루마니아 ····29
   - 나. 캐나다 ····30

Ⅲ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개혁보고서(OECD 보고서) … 33

1. 서언 ……33

2. OECD 국가의 소득불균형 현황 ……33

가. 최상위 소득자의 소득집중 ……33

나.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35

다. 소득세제의 누진성과 조세지출의 재분배 효과 ……35

3. 조세정책의 성과와 평가 ……37

가. 총세수 확대 ……37

나. 총세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세목구성을 변경하는 정책 ……38

다. 세수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세율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정책 ……40

라. 비조세정책 ……41

4. 조세정책 관련 제언 ……41

제 2 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Ⅰ 미국/캐나다 …… 45

1. 미국 2013 회계연도 예산안 ……45

가.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유인 ……46

나. 중산층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의 영구화를 위한 세제유인 ……48

다. 국내 투자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유인 ……50

라.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조세 감면 ……52

마. 부유층·고소득층에 대한 부시정부의 감세법 일몰종료 ····54
바. 국제거래 관련 조세제도 개정 ····56

2. 캐나다 2012 예산안 ····58
가. 클린에너지 관련 설비에 대한 자본비용공제 확대 등 법인세 개정 ····59
나. 배당유형 지정신고 규정 개선 등 소득세 개정 ····62
다. 의료부문의 면세·영세율 범위 확대 등 상품용역세 및 종합매출세 개정 ····65
라. 세무 기획자에 의한 등록 및 보고의무 강화 등 기타 세제조치 ····66

Ⅱ 유 럽 ···· 68

1. 네덜란드 2012 조세계획안 ····68
가. 이자비용의 공제 한도 규정 신설 ····68
나.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69
다. 협동조합 분배이익의 배당소득 인정 ····69

2. 덴마크 법인세 개정법안 ····69
가.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제한 ····69
나. 법인세 공동과세제도 개정 ····70
다. 납세정보 공시 ····71
라. 이전가격문서에 대한 외부감사 요구 ····71

3. 벨기에 2012 예산안 ····72
가. 자본이득 소득공제의 요건 강화 등 법인세 개정 ····72
나. 부가세 추가 징수 등 소득세 개정 ····74
다. 원천징수세율 인상 ····75
라. 부가가치세율·증권거래세율 인상 등 간접세 개정 ····75

4. 스페인 2012 개정세법 ····· 76
가. 중간예납세액 산정방법의 적용기한 연장 등 법인세 개정 ····· 76
나. 소득세율 인상 등 소득세 개정 ····· 76
다. 원천징수세율 인상 ····· 78
5. 영국 2012회계연도 예산안 및 2012 재정법 ····· 78
가. 법인세율 인하 등 법인세 개정 ····· 79
나.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등 소득세 개정 ····· 80
다. 토지인지세 인상·신설 등 간접세 개정 ····· 82
라. 스위스와의 조세협약 효력 발생 ····· 82
6. 오스트리아 2012 긴축재정안 ····· 83
가. 부정기적 급여에 대한 부가세 부과 ····· 83
나. 연구개발 프리미엄의 한도 인상 ····· 84
다. 그룹과세제도 공제 가능 손실액의 한도 설정 ····· 84
라. 부동산 자본이득세의 보유기간 요건 폐지 ····· 85
마. 금융거래세 도입 ····· 85
바. 스위스와의 조세협정 체결 ····· 85
7. 이탈리아 법인세제 개정 ····· 86
가. 자기자본공제제도 ····· 86
나. 이월결손금 규정 ····· 86
8. 프랑스 2012 재정법 ····· 87
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가세 도입 등 법인세 개정 ····· 87
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가세 도입 등 소득세 개정 ····· 88
다. 법인세 부가세 도입에 관한 과세당국의 적용지침 ····· 89
9. 헝가리 금융거래세법 ····· 90

Ⅲ 아시아/오세아니아 ····· 92

1. 싱가포르 2012 예산안 ····· 92
가.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등 법인세 개정 ····· 92
나. 기본공제 및 장애자공제의 인상 등 소득세 개정 ····· 93
다. 특별고용지원금 등 조세 혜택 개정 ····· 94
라. 여행객에 대한 GST 면제 등 GST 개정 ····· 95
마. 담배생산 부과금의 인상 등 기타조치 개정 ····· 95

2. 일본의 소비세 인상 법안 ····· 96

3. 중국의 소프트웨어 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 조치 ····· 97
가. 소프트웨어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혜택 ····· 98
나. 3% 초과 부가가치세의 환급 혜택 ····· 98
다. 가속상각의 허용 등 기타 혜택 ····· 99

4. 홍콩 2012-13 예산안 ····· 99
가. 이윤세 등에 대한 환급 예정 ····· 99
나. 소득세에 적용하는 기본 공제액 등의 증가 ····· 100
다. 주택대출이자에 대한 공제기한 연장 등 기타 개정 ····· 101

5. 뉴질랜드 2012 예산안 ····· 101
가. 9,880뉴질랜드달러 이하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폐지 ····· 102
나. 저소득층을 위한 과세소득 면제 도입 ····· 102
다. 가축에 대한 평가규정 변화 ····· 102

6. 호주 2012-13 예산안 ····· 103
가. 중소기업 자산의 즉시상각 등 법인세 개정 ····· 104
나. 비거주자에 대한 자본이득 50% 감면 등 소득세 개정 ····· 104
다. 원천징수세율 인상 등 원천징수세 개정 ····· 105
라. 담배에 대한 관세면제범위 축소 ····· 105
마. 개인에 대한 과세소득 면제범위 증가 등 기타조치 ····· 105

제1부 표 목차

〈표 Ⅰ-1〉 최근 EU 회원국들이 단행한 세목별 세제개혁 ·····16
〈표 Ⅰ-2〉 EU 회원국의 부동산세 비율(2008) ·····20

〈표 Ⅱ-1〉 전략 단계에서 전통적인 목표 및 성과 측정지표 ·····24
〈표 Ⅱ-2〉 운용단계에서 성과 측정지표 ·····25
〈표 Ⅱ-3〉 캐나다 사업자의 등록 비율 ·····31
〈표 Ⅱ-4〉 세무신고 비율 ·····31
〈표 Ⅱ-5〉 올바르지 않은 세무신고 비율 ·····32
〈표 Ⅱ-6〉 세금 납부비율 ·····32

〈표 Ⅲ-1〉 총과세소득 중 상위 1%의 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율 ·····34
〈표 Ⅲ-2〉 법정 소득세율의 누진성 지수 추세 ·····36
〈표 Ⅲ-3〉 성장과 소득불균형에 관한 조세정책의 효과 ·····40

제2부 표 목차

〈표 Ⅰ-1〉 미국의 예산추이 ·····45
〈표 Ⅰ-2〉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유인 ·····48
〈표 Ⅰ-3〉 중산층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의 영구화 ·····50
〈표 Ⅰ-4〉 국내 투자촉진 및 일자리 창출 ·····52
〈표 Ⅰ-5〉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조세 감면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 ·····54
〈표 Ⅰ-6〉 부유층·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철회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 ·····56
〈표 Ⅰ-7〉 국제거래 관련 조세제도 개정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 ·····57
〈표 Ⅰ-8〉 CEAP 실행 이후의 정부 재정수지 ·····59

〈표 Ⅱ-1〉 스페인의 소득세율 개정(2011~2013년) ·····77
〈표 Ⅱ-2〉 부정기적 급여에 대한 부가세 세율 ·····83

〈표 Ⅲ-1〉 기본공제와 장애자공제 ·····93
〈표 Ⅲ-2〉 CPF의 부담률 ·····96
〈표 Ⅲ-3〉 소득세 공제액 비교표 ·····100

제1부 그림 목차

[그림 Ⅰ-1] EU · 미국 · 일본 및 OECD의 국민부담률(2008년) ·····14
[그림 Ⅰ-2] EU 27개국의 간접세 · 직접세 및 사회보장부담금 비율(1995~2010년) ·····15
[그림 Ⅰ-3] EU 27개국의 부채 대 자본의 유효한계세율 ·····18

[그림 Ⅱ-1] 성과측정의 단계 ·····22

제2부 그림 목차

[그림 Ⅲ-1] 호주의 현금예산수지 ·····103

제1부

주요 이슈별 조세동향

Ⅰ EU 회원국의 조세수입 및 세제개혁(EU 보고서)[1)]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EU 회원국의 조세구조, 세제개혁 및 조세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세보고서(taxation papers) "Monitoring Tax Revenues and Tax Reforms in EU Member States 2010"을 2010년에 발행함

○ 특히 금융위기 이후 EU 회원국들의 조세구조 변화와 세제개혁 내용 및 금융위기와 관련된 조세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1. EU의 조세구조

❑ 금융위기 이후 EU 회원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가 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EU 회원국의 국민부담률(tax-to-GDP ratio)은 여전히 높은 편임

○ [그림 Ⅰ-1]에서와 같이 2008년 EU의 국민부담률은 39.3%로서, 미국·일본 및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 EU의 높은 조세부담률은 재정지출 재원조달을 위해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지속된 세율인상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EU 회원국의 국민부담률은 국가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각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격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와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헝가리 이상 5개 국가의 국민부담률은 매우 높은 수준(40% 이상)인 반면, 동유럽을 비롯하여 지리적으로 변방(peripheral)에 위치한 국가들의 국민부담률은 비

1) European Commission, "Monitoring tax revenues and tax reforms in EU Member States 2010," EU, 2010. 6.

교적 낮은 편임

○ 그러나 1995년 이후 각국의 국민부담률 격차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Ⅰ-1] EU·미국·일본 및 OECD의 국민부담률(2008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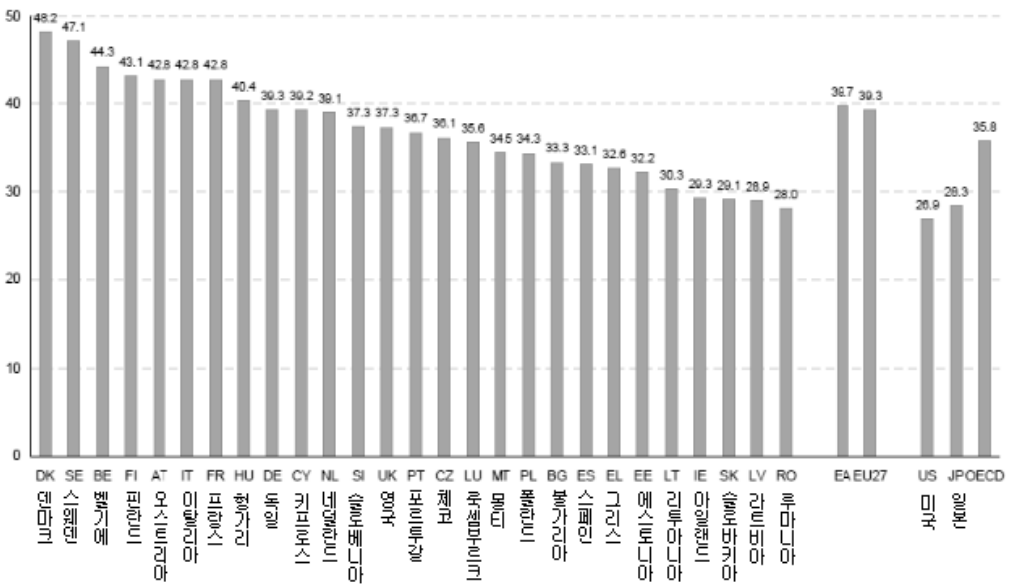

❑ 금융위기로 인해 직접세 세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EU 회원국들의 주요 세수가 직접세에서 사회보장부담금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임

○ EU 회원국의 세수는 크게 간접세(부가가치세, 소비세, 생산세, 수출세, 물품세 등), 직접세(법인세, 소득세, 자본이득세 등) 및 사회보장부담금으로 구성됨

○ 경기순응적(pro-cyclical) 움직임을 보이는 직접세는 경기순환주기에 민감한 반면, 사회보장부담금은 경기순환주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함

○ 이에 따라 [그림 Ⅰ-2]에서와 같이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 이후 직접세 세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사회보장부담금의 세수는 오히려 증가함

○ 간접세는 일부 국가에서 감행한 자유재량적 감세조치(discretionary tax cuts)의 영향으로 2008년 이후 감소함

[그림 Ⅰ-2] EU 27개국의 간접세·직접세 및 사회보장부담금 비율(1995~2010년)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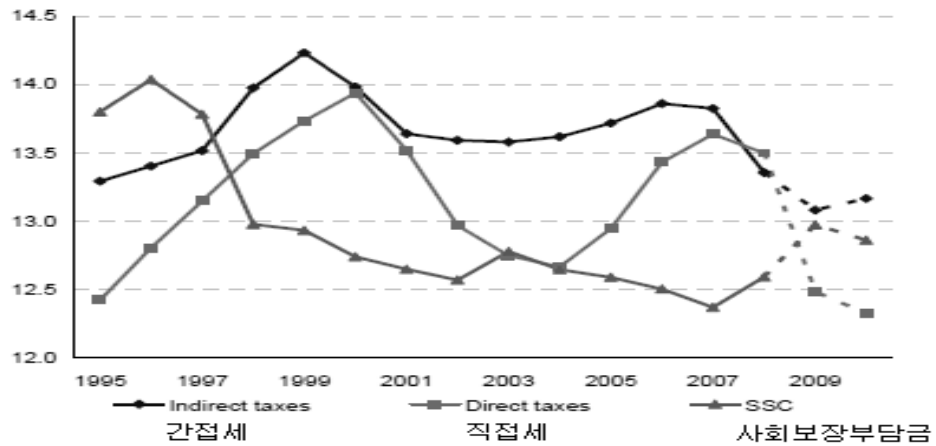

자료: Commission services

❑ 장기적으로는 EU 회원국들의 직접세·간접세 및 사회보장부담금의 세수구성비가 각각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됨

2. 금융위기 이후 EU 회원국의 세제개혁

❑ 금융위기 이후 EU 회원국들은 다양한 세제개혁을 단행하였음

○ 특히 2008~2009년에는 재정부문 지원 및 수요 촉진을 위한 자유재량 예산조치(discretionary budgetary measures)가 단행됨

〈표 Ⅰ-1〉 최근 EU 회원국들이 단행한 세목별 세제개혁

구분		세율	과세소득 범위 (특별 세제조치 포함)
법인세	증가	리투아니아, 헝가리, 포르투갈	벨기에, 불가리아, 아일랜드, 그리스(2009~2013), 이탈리아, 리투아니아(2009~2011), 헝가리
	감소	체코, 그리스(2010~2014), 헝가리,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스웨덴,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벨기에(2010~2011), 독일, 스페인(2009~2011), 이탈리아, 키프로스,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슬로바키아, 영국(2009~2011)
개인소득세	증가	그리스, 아일랜드, 프랑스, 라트비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영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감소	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독일, 덴마크, 스페인(2008), 핀란드, 헝가리, 몰타,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사회보장 부담금	증가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감소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핀란드
부가가치세	증가	체코, 그리스, 스페인,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감소	아일랜드, 핀란드, 영국(2008.12~2009)	벨기에, 독일, 키프로스, 프랑스, 리투아니아, 몰타, 헝가리, 네덜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핀란드
물품세	증가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핀란드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라트비아
	감소	이탈리아, 리투아니아(2009~2011),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0a.

❑ EU 회원국들이 단행한 세제개혁은 크게 ① 세율 개정과 ② 과세소득 범위 조정으로 구분됨

❑ 직접세의 경우 대체로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조치가 이루어짐
  ○ 이는 노동과 자본의 공급 및 수요를 촉진함으로써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임
    - 특히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하 및 공제 인상 조치를 단행한 국가가 많았음

❑ 재정적자 회복을 위한 재원은 부가세 및 물품세의 세율 인상 및 세원 확대를 통해 조달됨
  ○ 다수의 국가에서 부가가치세율 및 물품세율이 인상됨
  ○ 재산세 또한 부동산세에 대한 면세점 인하, 누진세율 도입 등을 통해 세수가 증대됨
  ○ 이 밖에도 환경세와 같은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였음

❑ 반면, 간접세의 무분별한 인상은 거래 흐름 및 자본 분배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함
  ○ 경제성장 측면에서 볼 때 간접세 인상을 통한 재원 확보가 직접세보다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수 있음
  ○ 그러나 간접세의 무분별한 인상은 국가 간 재화 가격의 불균형을 유발하여 거래 흐름 및 자본 분배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

3. 금융위기 관련 조세정책

❑ 조세는 금융위기를 초래한 직접적 요인은 아니었으나, 일부 조세정책은 금융위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따라서 금융위기와 관련된 조세정책을 살펴보고 현 조세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가. 자본조달비용과 조세정책

❑ 현 법인세제하에서는 부채조달이 자본조달보다 유리함

- ○ 부채조달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과세소득에서 손금으로 공제 가능한 반면, 자본조달은 이와 같은 조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음
- ○ [그림 Ⅰ-3]과 같이 모든 EU 회원국에서 부채의 유효한계세율이 신규자본의 유효한계세율보다 낮게 집계됨

❑ 따라서 기업은 자본조달보다 부채조달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기업의 부채비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유발함

- ○ 금융위기를 통해 기업들이 경험한 바와 같이 부채비율이 증가하면 신용경색 발생시 기업의 유동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함

[그림 Ⅰ-3] EU 27개국의 부채 대 자본의 유효한계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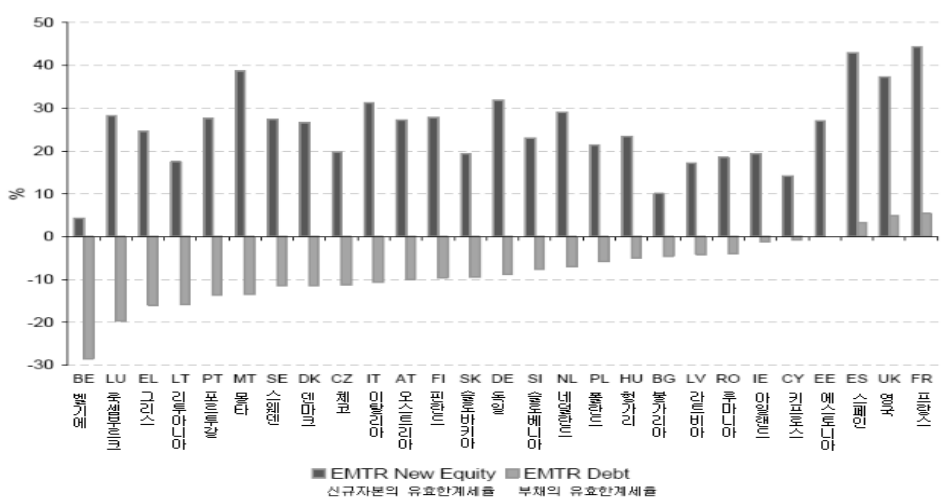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0e.

❑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자기자본공제제도(Allownace for Corporate Equicy, ACE), 포괄사업소득과세제도(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 CBIT) 또는 두 제도의 절충안의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ACE는 자기자본으로부터 발생한 자본이익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자기자본에 대해 부채와 동일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 CBIT는 법인이나 비법인(개인사업, 파트너십 등) 형태의 사업체를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로서, 부채와 지분을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해 법인 등이 지급한 차입이자나 배당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음

- 두 제도의 효과성의 우위관계는 아직 입증되지 아니함

○ ACE와 CBIT의 절충안은 일부 자본이익의 소득공제를 허용함과 동시에 일부 이자비용의 소득공제를 제한하는 방안으로서, 두 제도의 세수효과를 상쇄시킴으로서 재정구조 측면에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음

나. 부동산시장과 조세정책

❑ 미국과 같이 유럽의 대부분 국가에서도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까지 주택가격이 과대평가되어 부동산 거품이 형성되는 문제가 발생함

❑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위기의 주된 원인은 낮은 이자비용, 거래비용 및 무분별한 신용확대에 있으나, 조세도 부동산 가격상승에 일부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 많은 국가의 부동산세제가 주택소유자에 대해 이자비용의 소득공제 허용, 낮은 재산세 부과와 같은 조세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 〈표 Ⅰ-2〉에서와 같이 EU 회원국의 총조세에서 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수준임

○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세혜택은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김과 동시에 주택 공급 및 수요 측면에 외부적 충격이 발생 시 그 경제적 효과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함

〈표 Ⅰ-2〉 EU 회원국의 부동산세 비율(2008)

(단위: %)

회원국	GDP 대비 비율	총조세 대비 비율
오스트리아	0.43	1.01
벨기에	1.16	2.63
불가리아	0.20	0.61
키프로스	0.48	1.22
체코	0.40	1.11
독일	0.65	1.68
덴마크	0.97	2.03
에스토니아	0.30	0.93
그리스	0.84	2.58
스페인	0.79	2.41
핀란드	0.49	1.14
프랑스	1.86	4.34
헝가리	0.23	0.57
아일랜드	1.32	4.54
이탈리아	0.84	1.97
리투아니아	0.26	0.89
라트비아	0.63	2.19
몰타	1.16	3.39
폴란드	1.09	3.17
포르투갈	1.13	3.09
루마니아	0.76	2.76
스웨덴	0.75	1.61
슬로베니아	0.53	1.43
슬로바키아	0.36	1.27
영국	3.53	9.48

주: 일부 국가의 수치는 부동산 거래에 직접 부과되지 않은 거래세나 기타 미미한 금액의 조세가 누락됨에 따라 과소평가되어 있음

자료: 'Taxes in Europe' Database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요 세제조치로는 ① 주택소유자에 대한 귀속임대료(imputed rents) 과세와 ② 주택보조금 폐지 및 이자비용 공제 제한이 있음

○ 귀속임대료란 주택소유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스스로 임대료를 지급(또는 수령)한 것으로 의제하여 계산한 임대료임

❑ 이 밖에도 주택소유권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거나 부동산의 현재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안, 부동산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재화 또는 용역(예: 보험 등)에 과세하는 방안 등 부동산으로부터 세수를 창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고려되고 있음

다. 금융기관 임원보수와 조세정책

❑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상체계 문제는 금융위기 발생 원인의 하나로 주목받기 시작함

○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오직 단기 성과를 기준으로 임원 등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OECD는 조세정책이 임원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고정급과 같은 전통적 보상체계와 비교하여 보너스, 스톡옵션과 같은 성과연동보상체계(performance-related pay)에 조세혜택이 더 부여되는지 여부를 연구한 바 있음

❑ 연구 결과 대부분 국가의 조세정책은 성과연동보상체계와 전통적 보상체계에 대해 차별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2)]

○ 오직 일부 국가에서만 성과연동보상체계에 대해 스톡옵션 과세이연과 같은 제한적인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금융기관 보상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규제개혁과 함께 주식기준보상(equity-based pay-outs)에 대한 세율 인상과 같은 조세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

2) OECD, *The Taxation of Employee Stock Options*, Tax Policy Studies No. 11, 2005.

Ⅱ 조세행정에서의 성과관리(IMF 보고서)[3]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조세행정에 대한 성과측정지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술보고서(Technical notes and Manuals)인 "Revenue Administration: Performance Measurement in Tax Administration"를 2010년 6월에 발행함

○ 이 보고서는 조세행정에 대한 성과측정을 전략 단계(strategic level), 운용 단계(operational level), 인적 단계(individual staff)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 단계별로 주요 과업(task)은 무엇인지 등을 제시하고 있음

[그림 Ⅱ-4] 성과측정의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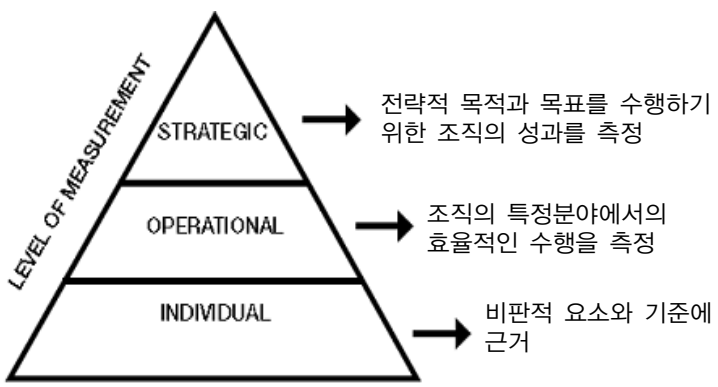

❑ OECD 및 성과측정을 해왔던 많은 국가들은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성과관리를 통하여 효율성·명확성·투명성을 향상시켰다고 언급하고 있음[4]

3) William Crandall, "Revenue Administration: Performance Measurement in Tax Administration," IMF, 2010. 6.

❑ 성과측정 시스템에서 정보의 종류는 투입(input), 활동(activities), 산출(output), 결과(results)로 나눌 수 있음

○ 투입은 성과 평가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자원으로서 돈(money), 사람(staff), 인별 시간(staff time), 설비(facilities) 등이 포함됨

○ 활동은 입력자원을 이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략이나 기술의 사용 등이 포함됨

○ 산출은 활동의 직접적 산출물로서 대부분 수행한 작업량으로 측정됨

- 작업량은 세무조사를 한 횟수, 해결한 소송의 횟수, 강제 징수한 횟수 등이 포함됨

○ 결과는 활동을 한 후에 정부나 국민이 얻은 혜택이나 변화로서 행위나 태도, 형평과 공평, 세수와 관련이 있음

1. 조세행정의 전략 단계(strategic level)에서 성과관리

❑ 전략 단계의 목표는 가장 중요하고 달성 가능한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비교적 적은 수로 유지해야 함

○ 상위수준의 전략적 목표는 그 수를 적게 하고 분명히 표현해야 함

- 목표의 수는 3개에서 6개 정도로 설정함
- 단일 지표로는 조직이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완적인 지표가 필요함

❑ 이 단계의 측정지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전체 조직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함

○ 기능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쳐야 함

○ 최상위단계의 결과를 반영해야 함

○ 전략 단계의 목표와 최상위단계의 목표를 지원해야 함

4) 성과관리는 성과측정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성과측정뿐 아니라 성과의 적절한 수준에 대한 결정과 성과 정보의 보고,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 실제 성과정보를 사용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임

❑ 전략 단계에서 목표 및 이와 관련된 측정지표는 〈표 II-1〉과 같음

〈표 II-1〉 전략 단계에서 전통적인 목표 및 성과 측정지표

전통적인 전략 목표	전통적인 성과 측정지표
• 세법에 대한 준수의지를 향상 • 고객의 관심사에 대한 집중도를 향상 • 조직을 효율적이고 윤리적이며 적응력 있는 조직체로 육성 • 생산성과 비용 효율성을 향상 • 납세자가 그들의 의무를 다하는지에 대한 확신 • 공동체 신뢰의 유지 • 세법준수의 용이성을 증진 • 납세자 의무이행의 결과인 세수가 정부프로그램의 자금조달원으로써 이용된다는 확신 • 납세자가 사회에 참여할 권리나 자격이 있을 때 납부한 세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 • 세무준수를 촉진하는 환경을 창출 • 미래의 산출을 전달하기 위해서 인적자원과 기술에 지속적인 투자	• 예산과 비교하여 세목의 종류별로 징수되는 순세수 • 승인된 예산과 비교한 총 조세지출 • 징수원가(직접)의 비율 • 신고(filing)와 납부(payment)의 비율 • 소득신고비율(세무조사를 통해서) • 납세자 만족도 조사

자료: IMF 보고서

2. 조세행정의 운용 단계(operational level)에서 성과관리

❑ 운용 단계에서 성과관리 목표는 조직 단계에서 언급한 목표를 좀 더 특정화하고 제한적으로 설정함

○ 운용 단계의 목표는 전략 단계의 산출을 실현하기 위해서 달성될 필요가 있는 좀 더 상세한 활동으로 설정됨

- 활동들은 특정화된 과업으로 전자신고의 증가나 세무조사비율의 증가 등이 있음

○ 목표는 미래 성과를 위한 것으로 정해져야 하며, 규범·기간 또는 단순한 방향(특정한 측정지표의 '증가' 나 '감소')으로 정함

〈표 II-2〉 운용단계에서 성과 측정지표

조세행정 기능	양적 측정지표	시계열, 질적 측정지표
등록과 조세신고	• 신규 등록자 수 • 조세종류별로 무신고자의 수	• 신규 등록의 평균시간 • 무신고자를 해결하기 위한 평균시간 • 추정된 지연가산세 • 납세자 등록의 정확성
납세자 서비스와 교육	• 도움을 받은 납세자의 수(전화, 방문) • 서면 회신(E-메일, 인터넷회신) • 자문을 받기 위한 방문횟수 • 교육적인 세미나횟수	• 서비스를 위한 납세자의 평균 대기시간 • 납세자의 서면응답 요구 시 회신까지의 평균시간 • 제공된 응답의 정확성 • 방문과 세미나의 유용성(설문조사에 의해 결정)
신고과정과 납부	• 과세종류별로 신고된 세무신고의 수 • 과세종류별로 제기된 환급의 수 • 전자신고의 비율 • 서면신고의 비율 • 납부된 세무신고의 수(전자 혹은 매뉴얼) • 납부된 세금납부액	• 평균적인 신고시간 • 환급을 받기까지 평균일 • 신고과정의 정확률/오류율 • 지급과정의 정확률/오류율
체납징수	• 회수된 체납가액 • 징수종결된 사례수 • 연락된 납세자수 • 과세연도별로 할당된 자원 • 과세연도별로 연평균징수액	• 회수된 경우의 평균 연령 • 특정개월 이내에 해결된 사례의 비율 • 질적인 회수의 예(점수를 부여하는 특정기준에 근거)
감사와 조사	• 과세종류별로 한 세무감사의 수(단순, 포괄, 주제별, 기타) • 과세종류별로 감사에 의해 추정된 추가적인 과세액 • 과세연도별로 할당된 자원 • 과세연도별로 추정된 추가적인 과세액 • 완료된 세무조사 수	• 감사의 종류별로 감사를 종료할 때까지의 평균시간 • 감사의 질(점수를 부여하는 특정기준에 근거) •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의 평균시간
소송	• 종결된 소송사례의 수 • 과세연도별로 할당된 자원 • 소송에 따른 조정가액 • 법원에서 인용된 사례의 수	• 소송의 평균기간 • 소송사례의 질(점수를 부여하는 특정기준에 근거) • 법적 최종기일에 맞춰진 정도

자료: IMF 보고서

❑ 운용 단계의 성과 측정에서 측정지표는 핵심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측정지표여야 하며, 선택된 측정지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함

- ○ 성과지표는 양적, 질적, 시계열적인 특성을 가져야 함
- ○ 측정하기 어려운 성과지표의 경우에는 성과 측정의 신뢰성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측정 가능해야 함
- ○ 성과 측정의 결과가 잘못된 것인지 재조사하는 경우에도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도록 성과 측정의 과정은 개방되고 입증 가능해야 함

❑ 양적 측정지표는 조세행정 과정에서 수행한 많은 활동들과 그 활동의 효율성을 측정함

- ○ 활동에는 세무조사를 행한 수, 처리한 납세자의 수, 신고 과정의 수 등이 있음
- ○ 효율성은 세무공무원별로 응대한 전화 수, 세무공무원별로 종결된 징수사례, 조사관의 시간당 평균 징수액 등이 있음

❑ 질적 측정지표는 납세자 서비스와 세무대리인이 행한 행위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정도를 측정함

- ○ 질적인 측정은 미리 정해놓은 기준선(baseline)과 세무서에서 수행한 각 항목별 예시 작업을 비교하여 수행함
- ○ 새로운 성과 측정지표는 성과에 대한 기준선(baseline)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함

3. 조세행정의 인적 단계(individual staff member level)에서 성과관리

❑ 인적 단계의 성과관리는 논리적으로 조직 단계의 성과관리와 연계되어야 하며, 인적 단계의 성과 측정지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측정지표가 조직 단계의 성과 측정지표와 연계되어야 함

- ○ 이러한 접근방법은 조직의 성과와 개인의 성과가 동일한 방향이 되도록 돕고, 조직의 성과에 대한 개인의 공헌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줌

○ 예를 들어 세무조사 팀장이나 고액 납세자 팀장의 입장에서의 '고액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세무조사비율 증가' 라는 목표는 '세법에 대한 준수의무 향상' 이라는 폭넓은 조직목표와 연계됨

- 개인의 성과 측정지표가 조직의 성과 측정지표와 연계되어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를 연계시킬 수 있음

❑ 인적 단계의 조세행정에 대한 성과 측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음

○ 세무공무원의 성과는 조직의 전략적 목적과 연계되어야 함

○ 인적 단계의 성과 목표는 시계열적이고 지속적이며 투명해야 함

○ 운용단계에서 성과 측정지표는 개인의 책임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함

○ 인적 단계의 성과 목표는 전체 조직의 계획으로 모아질 수 있고 조직의 계획은 부서의 계획과 연계되어야 함

4. 성과관리 시스템에서 주요 과업(key tasks)은 무엇인가?

❑ 많지는 않지만, 일부 조세행정에서 포괄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이 도입되었음

○ 포괄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책임감이 결여되어 조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함

❑ 성과관리시스템의 주요 과업은 첫째, 핵심적인 성과측정지표를 명확화, 둘째, 성과측정지표의 세부사항을 구체화, 셋째, 미래 설정될 기준선(baseline)의 설정, 넷째, 측정지표의 결과를 보고 및 분석, 다섯째, 수행된 업무의 질에 대한 확신, 여섯째, 성과관리의 틀을 위한 조직의 책임을 결정해야 함

○ 핵심적인 성과측정지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질적·양적 측정지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측정지표는 전략 단계와 운용 단계에서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됨

○ 성과측정지표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각 성과측정지표의 확실성과 타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각 측정지표에 대한 상세한 정의, 측정지표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 자료의 원천, 보고의 빈도, 측정 자료를 생성하기 위한 과정과 기록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측정지표는 미래 설정될 기준선(baseline)에 바탕을 두어 설정되어야 함

- 양적인 측면에서 측정지표는 주어진 기준선(baseline)으로부터 일정한 방향으로 설정되기도 함

○ 측정지표의 결과를 보고 및 분석하기 위해서 결과 측정을 위한 틀이 준비되어야 하고 보고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보고는 모든 관리자에게 제공되고 피고용인이 측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별 결과가 제공되어야 함
- 측정을 위하여 제공된 정보에는 이용가능한 과거 및 현재의 실제 성과, 목표가 포함되어야 함
- 목표에 대비한 실적 분석이 각 측정지표별로 이루어져야 함

○ 질적 검토는 일년 동안 특정 기능을 수행한 업무 중에서 통계적으로 타당한 표본을 검토하여 이루어짐

- 올바르고 적정한 절차인지에 대한 평가는 각 기능에 의해 만들어진 서비스나 업무 표본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음

○ 성과관리의 틀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조직에 특정한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세행정은 전략적·운용적 계획 안에서 관련 기능과 결합되어 이루어져야 함

5. 다른 국가의 성과관리

❑ 루마니아와 캐나다의 예를 제시함

○ 루마니아는 성과측정을 하고자 시도했으나 실패를 한 사례로, 최근 이를 다시 시도하고 있음

○ 캐나다는 오랫동안 성과를 추적하고 측정하고 있는 사례임

가. 루마니아

❑ 루마니아는 약 2,300만명의 인구를 가진 국가로 조세행정을 위한 세무서는 42개 지방에 300개 정도임

❑ 지방 세무서와 협의하에 2004년과 2005년에 성과측정지표를 결정하여 지역별로 자료를 수집함

○ 12개의 측정지표를 만들었고, 지표의 이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지표를 계산하는 방법, 보고 빈도를 결정함

○ 12개의 측정지표는 20일 안에 응답한 서면질의 수, 세무보고의 자발적 수준, 세금납부의 자발적 수준, 고액 납세자로부터 징수한 세액, 실제징수액/예상세수, 강제집행을 통하여 징수된 세수의 비율, 세무조사자당 연평균 세무조사, 세수조사로부터 얻은 추가 세액, 세무조사자당 세무조사로 얻은 추가 세액, 소송이 제기된 과세액의 비율, 납세자가 승소한 비율, 과세관청이 승소한 비율임

❑ 이러한 성과측정지표는 합리적인 출발점이 되었고 필요한 자료도 수집 가능했지만, 접근방법과 측정지표 자체에 결점이 있었음

○ 자료는 생성되었지만 이 자료가 관리 측면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음

○ 성과측정지표 중 변화와 관련된 측정지표가 없었고 결국 시스템이 폐기됨

○ 성과측정지표가 기준이나 목표를 가지지 못하여 현재의 상황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인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움

○ 또한 소송 비율 등 몇 개의 측정지표는 세무 행정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났음

○ 측정지표가 변화되는 경우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사전적인 동의가 없었음

- 예로서 세무조사로부터 얻은 추가 세액이 보다 효율적인 세무조사의 결과인지,

신고의무가 감소했던 결과인지, 양 쪽의 결과가 혼재된 것인지 등에 대해 미리 정의하지 못함

❑ 이러한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2007년 조세행정에 대한 전략적 계획안에서는 조직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체계적 수단을 도입함

○ 이전에 도입했던 12개의 측정지표보다 많은 측정지표를 도입하여 조직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도록 함

- 모든 측정지표는 조직의 전략적 계획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정되었고, 성과관리에 대한 검토는 목표와 대비하여 성공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연계되었음

○ 새로운 전략적 계획을 통하여 지역단위, 국가단위의 성과 측정이 포괄적인 발전을 시작하였음

나. 캐나다

❑ 캐나다의 조세행정은 캐나다 국세청에 의해 수행되며, 캐나다는 성과관리를 오랫동안 계속해 왔고 지금도 발전시키고 있음

○ 캐나다 국세청에는 4만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음

❑ 의회에 제출된 2008/09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략적 성과와 기대치를 바탕으로 실제 달성된 결과를 양적, 질적 지표를 통해 결정한다고 언급하고 있음

○ 설문조사의 결과, 통계적 표본, 운용 자료 등을 통하여 국세청의 추정치를 형성함

○ 전략적인 성과측정지표와 기대하는 결과에 대한 강건한 측정지표를 발전시켜오고 있지만, 좀 더 견고하고 측정 가능한 측정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캐나다가 설정한 두 가지의 전략적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납세자가 그들의 의무를 다해야 캐나다 국세청의 근간이 보호됨

○ 둘째, 적격한 가정과 개인은 적시에 올바른 혜택을 받음

❑ 전략적 목표와 프로그램 활동들은 법인 계획하에 제시된 목표를 충족, 거의 충족, 미충족했는지에 따라 등급화됨

○ 목표는 성과 수준에 포함된 국세청의 기대비율로 표시됨

○ 성과 목표는 캐나다 사람들의 기대수준, 포함된 업무의 복잡성, 역사적인 성과, 제약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관리 팀에 의해 결정함

❑ 전략적 결과에 대비하여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캐나다 국세청의 아래와 같은 4가지 측정지표만을 사용하며 측정지표에 대한 지표는 1개 이상임

○ 첫째 측정지표는 등록된 사업자(compliance)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등록한 캐나다 사업자의 비율임

〈표 Ⅱ-3〉 캐나다 사업자의 등록 비율

지표	현재목표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기준
GST/HST를 위해 등록한 캐나다 사업체	90%	96.8%	97.7%	97.0%	93.8%	충족

자료: IMF 보고서

○ 둘째 측정지표는 사업자의 신고로 기한 내에 세무신고를 한 비율임

〈표 Ⅱ-4〉 세무신고 비율

지표	현재목표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기준
개인에 대한 소득세 신고비율	90%	92.8%	93.0%	92.5%	92.8%	충족
기한 내에 과세소득을 신고한 법인 비율	90%	86.4%	86.4%	85.8%	84.4%	미충족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법인	90%	91.8%	91.4%	n/a	90.5%	충족
기한 내에 과세소득을 신고한 종업원	90%	94.5%	96.0%	95.5%	96.4%	충족

자료: IMF 보고서

○ 셋째 측정지표는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추정하는 데 납세자가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 하는 지표임

〈표 Ⅱ-5〉 올바르지 않은 세무신고 비율

지표	현재목표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기준
미신고비율 추정치						
주요 세액공제나 비용공제가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비율	감소추세	15.5%	14.7%	14.8%	16.5%	미충족
중소기업 신고자에 대한 무작위 세무조사	N/A	N/A	N/A	N/A	13.8%	N/A

자료: IMF 보고서

○ 넷째 측정지표는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세금 전액을 납부하는지를 측정한 지표임

〈표 Ⅱ-6〉 세금 납부비율

지표	현재목표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기준
기한 내에 보고된 세금을 납부한 개인의 비율	90%	92.4%	92.9%	91.5%	93.2%	충족
기한 내에 보고된 세금을 납부한 법인의 비율	90%	92.9%	90.9%	92.4%	92.2%	충족
사업자에게 징수된 부가가치세액	N/A	2.8M	3.0M	3.0M	3.3M	N/A
기한 내에 납세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비율	90%	88.7%	87.7%	89.2%	87.3%	거의 충족
총현금징수액 대비 미납부세액의 비율	감소추세	5.62%	5.79%	6.23%	6.64%	미충족

자료: IMF 보고서

○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전략이 차기 전략 및 운용계획에 설정되어야 함

Ⅲ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개혁보고서(OECD 보고서)[5]

1. 서언

❑ OECD는 2012년 2월 24일에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개혁 보고서 2012(Economic Policy Reforms 2012: Going for Growth)"를 발간함

○ 이 보고서는 경제위기 기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OECD 각국이 이룬 경제정책 개혁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과제와 교훈을 제시함

❑ 조세정책의 평가와 교훈이 포함된 부분은 제5장 "경제활성화와 동시에 소득불균형 해소가 가능한가?"에서 다루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제5장에서 기술된 조세정책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됨

2. OECD 국가의 소득불균형 현황

가. 최상위 소득자의 소득집중

❑ 소득불균형은 소득분포상 최상위 소득자에 대한 소득의 집중으로 인해 발생됨(Hoeller, 2012)

○ 미국의 경우, 최상위 1%의 소득자는 2008년 총세전소득의 18.1%를 차지함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최상위 소득자가 총세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함(〈표 Ⅲ-1〉 참조)

5) OECD, "Economic Policy Reforms 2012: Going for Growth," 2012. 2.

〈표 Ⅲ-1〉 총과세소득 중 상위 1%의 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율

(단위: %)

국가	1980년	2008년 (또는 이용가능한 최근연도)
스웨덴	4.00	4.50
네덜란드	5.80	5.60
덴마크	5.20	6.50
핀란드	3.30	7.10
노르웨이	4.70	7.50
벨기에	7.00	7.70
스페인	7.50	8.80
프랑스	7.60	8.90
뉴질랜드	5.60	9.00
일본	7.20	9.20
이탈리아	6.90	9.40
포르투갈	3.60	9.80
아일랜드	6.60	10.30
스위스	8.80	10.50
독일	10.80	11.10
오스트레일리아	4.80	11.20
캐나다	8.10	13.30
영국	6.70	14.20
미국	8.10	18.10

자료: OECD, "Economic Policy Reforms 2012: Going for Growth," p. 188.
〈http://dx.doi.org/10.1787/888932566554〉

❑ 최상위 소득자에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조세제도상 원인으로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하와 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급여보상 방법의 활용이 있음

❑ 첫째, 고소득자의 세율이 점차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짐

○ 최상위 한계세율이 50%인 국가의 경우 한계세율이 1% 낮아질 경우 과세소득이 1%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6)]

6) OECD, "Economic Policy Reforms 2012: Going for Growth," p. 187.

❑ 둘째, 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급여보상 방법의 활용이 증가함

○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급여(compensation)를 수급하여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킴

○ 예를 들어, 자본이득은 다른 소득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톡옵션으로 보상받을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나.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첫째, 세수구성에서 누진적인 개인소득세, 부유세 및 상속세보다 소비세나 사회부담금이 증가하기 때문임

○ 둘째, 누진적인 세율구조가 일부 국가(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는 제한적이기 때문임

○ 셋째, 법정 누진세율 체계는 고소득 그룹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세지출에 의해서 약화되기 때문임

다. 소득세제의 누진성과 조세지출의 재분배 효과

❑ 조세제도가 재분배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근로소득세제의 누진성은 점차적으로 강화됨

○ 한계세율의 최대 인하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은 사회보장부담금을 감소하고 저소득자를 위한 근로관련 조세혜택을 강화함에 따라 근로관련 조세제도의 누진성이 증가함

❑ 반면에 고소득그룹에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지출의 사용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고소득그룹에 대한 조세지출에는 의료와 보육관련 세제혜택,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포함됨(OECD, 2010b)

〈표 Ⅲ-2〉 법정 소득세율의 누진성 지수 추세

국가	누진성 지수[1)2)]	
	2000년	2009년
아일랜드	0.23	0.23
벨기에	0.19	0.22
헝가리	0.16	0.20
룩셈부르크	0.18	0.18
멕시코	0.17	0.17
핀란드	0.16	0.16
스페인	0.13	0.16
오스트레일리아	0.17	0.16
아일랜드	0.20	0.15
프랑스	0.10	0.14
네덜란드	0.10	0.14
캐나다	0.13	0.14
이탈리아	0.12	0.14
포르투갈	0.13	0.13
독일	0.16	0.13
OECD	0.11	0.13
그리스	0.10	0.13
스웨덴	0.10	0.12
노르웨이	0.12	0.12
체코	0.06	0.12
미국	0.10	0.11
슬로바키아	0.07	0.11
덴마크	0.11	0.10
스위스	0.08	0.09
영국	0.08	0.08
터키	0.01	0.07
뉴질랜드	0.05	0.07
한국	0.05	0.07
일본	0.05	0.05
폴란드	0.04	0.03

주: 1) 법정 소득세율의 누진성지수는 소득수준을 일정한 간격으로 증가시킬 경우 증가되는 소득세율의 평균을 소득수준의 간격으로 나누어 계산함
2) 누진성지수는 자녀가 없으며 단독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납세자(single taxpayer)를 가정하여 계산함

자료: OECD, "Economic Policy Reforms 2012: Going for Growth," p. 193.
〈http://dx.doi.org/10.1787/888932566592〉

❑ 자본소득세제, 부유세 및 상속세는 많은 국가에서 축소되는 추세이며, 이는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명백히 축소시킴

○ 자본소득과 상속 등은 고세율의 과세구간에 있는 납세자에게 점차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자산관련 조세는 소득과 관련없이 지방재정에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되기 때문에 저소득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

○ 자산관련 조세는 국가마다 크게 차이가 발생하며 대부분은 부동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과세됨

3. 조세정책의 성과와 평가

❑ 조세는 소득의 분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노동과 생산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1인당 GDP에 영향을 미침

○ 다만 소득불균형(inequality)과 소득의 성장(Growth)은 상반관계(trade-off)를 갖는 경우가 많음

❑ 하지만 몇몇 조세개혁은 소득 분포의 분산을 감소시키면서 성장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됨

○ 다음은 조세정책과 소득불균형, 1인당 GDP의 관계에 관하여 설명함

가. 총세수 확대

❑ 총세수확대 정책은 소득불균형을 개선함

○ 소득에 관한 조세의 영향은 조세부담 수준(level of taxation), 세수구성(mix of tax revenue) 및 세수사용(use of tax revenue)에 따라 다르지만 조세제도가 전반적으로 누진적(progressive)인 경우 불균형이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됨

❑ 총세수확대정책은 1인당 GDP를 감소시킴

○ 조세부담은 대체적으로 노동, 저축 및 투자의 동기유발을 감소시킴

나. 총세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세목구성을 변경하는 정책

1) 개인소득세수를 축소하고 소비세수를 증가시키는 정책

❑ 개인소득세수를 축소하고 소비세수를 증가시키는 정책은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킴

○ 개인소득세는 누진적인 성향이 있는 반면에 소비세는 역진적인 성향이 있음

❑ 개인소득세에서 소비세로 세목구성을 변경하는 정책은 1인당 GDP를 증가시킴

○ 개인소득세는 노동과 저축의 동기유발을 축소시키므로 이러한 직접세를 간접세로 이전하는 것인 1인당 GDP를 증가시킬 수 있음

2) 노동관련 세수를 감소시키고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 관련 세수를 증가시키는 정책

가) 노동관련 세수를 자본이득 세수로 전환하는 정책

❑ 노동관련 세수를 감소시키고 자본이득 관련 세수를 증가시키는 정책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움

○ 부유세나 상속세는 누진적인 성격이 있으나 부유세나 상속세의 누진 정도에 대한 소득세의 누진 정도에 따라 불균형의 완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

❑ 노동관련 세수를 감소시키고 자본이득 관련 세수를 증가시키는 정책은 1인당 GDP를 증가시킴

○ 자산 관련 조세는 조세가 성장을 저해하는 정도가 약한 조세로 알려짐

○ 노동 관련 세수를 자본이득 관련 세수로 전환하는 정책은 적어도 단기나 중기에는 근로와 투자의 동기유발을 개선하여 생산을 확대시킴

나) 노동관련 세수를 부동산 관련 세수로 전환하는 정책

❑ 노동관련 세수를 부동산 관련 세수로 전환하는 정책은 소득불균형을 악화함

○ 부동산 관련 조세는 개인소득세에 비해 누진성이 약하거나 역진적일 수도 있음

❑ 노동관련 세수를 부동산 관련 세수로 전환하는 정책은 1인당 GDP를 증가시킴

○ 자산 관련 조세는 조세가 성장을 저해하는 정도가 약한 조세로 알려짐

○ 노동 관련 세수를 부동산 관련 세수로 전환하는 정책은 적어도 단기나 중기에는 근로와 투자의 동기유발을 개선하여 생산을 확대시킴

3) 조세지출 감축과 한계세율 인하

❑ 조세지출을 감축하거나 한계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은 대부분의 경우 소득불균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나 근로관련 세액공제(in-work tax credits)를 감축하는 정책의 경우에는 소득불균형을 악화시키는 효과가 있음

○ 대부분의 조세지출은 고소득 그룹에 혜택을 주므로 조세지출을 축소하는 것은 가처분소득 분포의 분산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 하지만 근로관련 세액공제와 같이 저소득 그룹에 혜택을 주는 조세지출을 축소하는 것은 소득불균형을 악화시킴

❑ 한계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은 1인당 GDP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

○ 한계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은 근로, 저축 및 투자의 동기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1인당 GDP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

다. 세수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세율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정책

❑ 세수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높이는 정책은 소득불균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이러한 정책을 EITC 또는 소득의 공제정책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득불균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

○ 근로관련 세액공제는 소득분포의 분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 세수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높이는 정책은 1인당 GDP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이러한 정책을 EITC 또는 조세감면 정책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인당 GDP를 증가시킬 수 있음

○ 세수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높이는 정책은 노동, 저축 및 혁신(innovation)에 대한 동기유발을 약화시키므로 노동시간이나 생산을 감소시킬 수 있음

○ 반면에 근로관련 세액공제는 노동의 참여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음

〈표 Ⅲ-3〉 성장과 소득불균형에 관한 조세정책의 효과

조세정책			소득불균형	1인당 GDP
총세수 확대			+	-
총세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세목구성을 변경하는 정책	개인소득세수를 축소하고 소비세수를 증가시키는 정책		-	+
	노동관련 세수를 감소시키고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 관련 세수를 증가시키는 정책	노동관련 세수를 자본이득 세수로 전환하는 정책	~	+
		노동관련 세수를 부동산 관련 세수로 전환하는 정책	-	+
	조세지출 감축과 한계세율 인하		+(-)[1]	+
세수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세율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정책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		+	-
	최고세율 인상과 더불어 EITC 또는 조세감면 확대		+	+

주: 1) 근로관련 세액공제의 경우 -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OECD, "Economic Policy Reforms 2012: Going for Growth," p. 197.

라. 비조세정책

❑ OECD "Economic Policy Reforms 2012: Going for Growth"에서 제시한 비조세정책으로는 교육의 질과 접근성 향상, 교육의 평등성 증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한 고용보호정책간 차이 축소, 이민자 통합 촉진,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보상 향상 및 차별 제거임

4. 조세정책 관련 제언

❑ 조세와 보조금 제도는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개인소득세는 누진적인 성격이 있는 반면에 사회보장금, 소비세 및 부동산 관련 조세는 역진적인 경향이 있음

❑ 하지만 누진성은 주로 고소득자를 위한 조세지출을 감소시킬 경우 강화될 수 있음

- ○ 또한 두번째 주택이나 스톡옵션 등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것은 조세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음
- ○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회피 수단을 제거하는 것은 조세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조세지출의 감소와 한계세율의 인하는 소득불균형을 완화함과 동시에 성장에도 기여하는 정책임

❑ 반면에 근로 관련 소득세나 법인세로부터의 세수를 소비세나 부동산 관련 조세로부터의 세수로 세수의 구성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 저축 및 투자의 동기유발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소득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음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Ⅰ 미국/캐나다

1. 미국 2013 회계연도 예산안

[조세동향 12-02호]

❑ 2012년 2월 13일 오바마 행정부는 3조 8천억달러 규모의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 본 예산안은 경제성장, 중산층의 보호, 미국 근로자에 대한 교육강화, 혁신과 제조업 및 클린에너지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고소득자에 대한 감면혜택의 종료를 통해 1.5조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 오바마 대통령은 '버핏룰'과 관련해서 연간 소득이 1백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자가 최저 30%의 세율을 부담해야 하며 현 최저한세 규정을 버핏룰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함[7)]

〈표 Ⅰ-1〉 미국의 예산추이

(단위: 십억달러, %)

회계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13-2017	2013-2022
예산총액														
세입	2,303	2,469	2,902	3,215	3,450	3,680	3,919	4,153	4,379	4,604	4,857	5,115	17,167	40,274
세출	3,603	3,796	3,803	3,883	4,060	4,329	4,532	4,728	5,004	5,262	5,537	5,820	20,607	46,959
재정적자	1,300	1,327	901	668	610	649	612	575	626	658	681	704	3,440	6,684
GDP대비														
세입	15.4	15.8	17.8	18.7	19.0	19.1	19.2	19.4	19.5	19.7	19.9	20.1	18.8	19.2
세출	24.1	24.3	23.3	22.6	22.3	22.5	22.2	22.0	22.3	22.5	22.7	22.8	22.6	22.5
재정적자	8.7	8.5	5.5	3.9	3.4	3.4	3.0	2.7	2.8	2.8	2.8	2.8	3.8	3.3

자료: 〈http://www.whitehouse.gov/omb/budget/Overview〉 참조

7) 〈http://www.whitehouse.gov/omb/budget/〉, p. 30

○ 2013 회계연도 적자규모는 9천억달러로 GDP 대비 5.5%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2018년부터 적자규모가 GDP 대비 3% 미만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조세분야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중산층 가구(Middle-Class Families)에 대한 세제혜택의 영구화 등을 포함해 크게 6가지로 구분됨

○ ① 성장 및 일자리 창출, ② 중산층 가구(Middle-Class Families)에 대한 세제혜택의 영구화, ③ 국내 제조업에 대한 투자 증가 및 국내 일자리 창출, ④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조세 감면, ⑤ 부유층·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정책의 철회, ⑥ 국제거래 관련 조세제도 개정

가.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유인

❑ 이는 2011년 9월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일자리법 개정안의 내용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음

❑ 2012년 2월에 종료하는 근로소득세(payroll tax)에 대한 2% 세금감면 혜택을 연장함

○ 2011년도 고용인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기존 6.2%에서 4.2%로 일시적으로 인하하고 개인사업자(self-employed individual)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를 기존 12.4%에서 10.4%로 인하하였으며, 이후 인하된 세율이 2012년 2월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연장됨

○ 본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보장세의 세율인하 조치가 2012년 말까지 연장되어 고용인에 대해 4.2%의 세율이, 개인사업자에 대해 10.4%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 신규투자 확대 및 경기회복을 위해 특정 자산의 취득비용을 첫해에 전액 감가상각하는 세제혜택을 연장함

○ 2011년에 한시적으로 특정 자산의 구입비용에 대해 구입한 첫 해에 전액 비용으로 공제하는 규정을 도입함

- 본 규정이 적용되는 특정 자산은 20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감가상각되는 유형자산,

수도설비자산(water utility property), 특정 컴퓨터 소프트웨어, 요건을 갖춘 임차자산개량권(qualified leasehold improvement property)을 포함함

○ 예산안에서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본 규정을 2012년까지 연장함

-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11년에 투자한 금액은 전액 손금으로 공제하였으나 2012년부터 투자액의 50%를 손금으로 공제할 것임

❑ 고용창출 및 고용증대를 위해 전기 대비 증가한 급여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 고용창출 및 고용증대를 통해 급여지급액이 증가한 고용주는 증가한 급여의 10% 상당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음

- 5백만달러의 급여 증가분(50만달러의 세액공제)을 한도로 적용됨

○ 98%의 기업이 본 규정의 적용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며 향후 10년간 180억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클린에너지 제조업(clean energy manufacturing)에 대한 세액공제 제한 금액을 증액함

○ 현재 특정 고급에너지 프로젝트[8](advanced energy project)에 사용하기 위해 특정자산[9]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3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 특정 고급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 50억달러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허용함

- 기존 제도하에서 미국 재무부는 고급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한 세액공제 금액을 23억달러로 제한하였음

○ 본 규정의 연장으로 50억달러의 추가 세액공제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향후 200억달러 규모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8) 재생가능자원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산, 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에너지 저장시스템, 재생에너지의 저장 등을 위한 자산, 이산화탄소 배출 방지를 위한 자산, 그린하우스 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고급에너지 장비의 생산 등을 위해 제조설비를 확대·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9) 고급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한 장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 시설장비의 필수부품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제외한 유형자산 등을 의미함

〈표 Ⅰ-2〉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유인

(단위: 백만달러)

회계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Total 2013-2017	Total 2013-2022
근로소득세의 감면 연장	63,153	31,159	-	-72	41	17	8	2	2	1	-	31,145	31,158
특정자산의 100% 감가상각 연장	35,046	14,830	-13,709	-10,284	-7,293	-5,376	-3,503	-2,246	-1,377	-1,029	-935	-21,832	-30,922
고용창출 및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설	14,227	12,601	1,054	1,162	1,048	881	461	458	389	230	164	16,746	18,448
고급에너지 제조세액공제의 확대	170	779	1,309	1,215	418	26	-67	-111	-57	-21	-7	3,747	3,484

주: 음수(-)는 재정적자 감소를 의미함
자료: 〈http://www.whitehouse.gov/omb/budget/Overview〉 참조

나. 중산층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의 영구화를 위한 세제유인

❑ 2012년까지 적용 예정인 대학교육비 세액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 규정을 영구적으로 적용함

- ○ 2012년까지 특정 요건을 갖춘 교육비와 중등과정 이후 받는 첫 4년간의 교육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매년 요건을 만족한 학생 한 명당 2,500달러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도록 규정함
- ○ 본 예산안에서 2012년까지 적용되는 세액공제 규정을 영구화할 계획임
- ○ 대학생이 있는 9백만 이상의 가구는 2012년에 평균 2천달러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 ○ 이번 개정으로 향후 10년 동안 1,370억달러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근로장려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의 적용에 있어 2012년에 종료되는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족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을 영구 적용함

○ 현행 근로장려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low-income)과 중산층(moderate-income)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높은 공제율이 적용됨

○ 본 예산안에서 2012년까지 적용되는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에 대한 공제율 혜택을 영구화할 방침임

○ 본 규정의 확대적용으로 향후 10년 동안 140억달러에 상당하는 추가 세액공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종업원에 대한 개인퇴직연금 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or Annuities, IRAS)의 자동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세액공제를 확대함

○ 본 예산안은 10명 이상 고용인이 있는 고용주가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자동적으로 등록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자동 개인퇴직연금 계좌를 도입한 경우 연금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어 지급되고 근로자의 개인 구좌에 예치될 것임

○ IRAS 자동가입 확대를 위한 임시세액공제를 신설함

- 100인 이하의 고용인이 있는 고용주가 종업원을 위해 IRAS 계좌를 등록하는 경우 첫해에 500달러, 다음해에 250달러를 한도로 등록 종업원 한 명당 25달러의 세액공제를 허용함

○ IRAS 초기 도입에 대한 세액공제(Startup Costs tax credit)를 확대함

- 소규모 고용주가 퇴직연금제도에 최초 가입하는 경우 적용되며 그 한도를 3년간 500달러에서 3년간 1천달러로 공제 혜택을 확대함

○ 본 규정은 2014년부터 적용되며 향후 10년 동안 150억달러에 상당하는 세부담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고소득 가구에 대한 감세혜택을 종료하고 중산층 가구에 적용되는 세액감면 혜택은 유지함

○ 고소득 가구에 대한 2001년도 및 2003년도 감세법 적용을 종료함

- 2013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5만달러(기타 연소득 2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 가구의 경우 2001년도 및 2003년도 감세법 적용을 배제함

〈표 Ⅰ-3〉 중산층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의 영구화

(단위: 백만달러, %)

회계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Total	
												2013–2017	2013–2022
대학교육비 세액공제의 영구 적용	-	672	12,673	12,962	14,066	14,154	15,217	15,610	16,588	17,070	18,358	54,527	137,370
대가족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 세액공제의 영구 적용	-	73	1,436	1,469	1,487	1,521	1,545	1,575	1,605	1,635	1,663	5,986	14,009
개인퇴직 연금계좌 (IRAS) 가입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	-	733	1,203	1,285	1,383	1,555	1,784	2,024	2,333	2,722	4,604	15,022
중산층 가구에 대한 감세법의 영구 적용	-103	-56,483	-59,618	-72,752	-87,204	-97,723	-104,486	-111,254	-118,250	-125,889	-134,000	-373,780	-967,659

주: 음수는 재정적자 감소를 의미함
자료: 〈http://www.whitehouse.gov/omb/budget/Overview〉 참조

○ 고소득 가정에 대한 유산세(Estate tax) 감면혜택을 종료함

- 유산세 감면 혜택을 2012년까지 종료하고, 2013년부터는 2009년까지 적용하였던 세율로 회귀함

○ 본 예산안은 2001년과 2003년 도입된 감세법을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에 계속해서 적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본 규정의 적용으로 향후 10년 동안 약 1조달러의 재정적자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다. 국내 투자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유인

❑ 국내 투자 및 고용이 증가한 산업분야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한 산업분야에 대한 세금공제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함

○ 본 예산안에서 미국 내 무역(trade) 및 사업(business)과 관련해서 지불하거나 발생한 특정비용의 20%를 세액(income tax)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제안함

○ 반면 해외로 일자리를 이전한 미국기업에 대해 해외무역 및 해외사업을 위해 지출하거나 발생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방안을 제시함

○ 본 예산안의 적용으로 향후 10년 동안 9천달러의 재정적자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는 국내 일자리창출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일자리의 해외이전에 대한 비용공제의 제한으로 인한 세수증가의 순효과임

❑ 군사기지 이전(military base closure), 공장폐쇄(plant closures)와 대규모 해고(layoffs) 등으로 인해 실직자가 발생한 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제조지역 세액공제(Manufacturing Communities tax credit)를 신설함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승인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에 약 20억달러의 세액공제가 적용될 예정임

❑ 국내 특정 제조활동에 대한 비용공제율을 제한하고 일부 고도기술 활동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을 증가하는 규정을 신설함

○ 예산안은 특정 비제조 활동뿐만 아니라 석유 및 석탄생산과 같은 제조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을 불공제하는 방안을 포함함

○ 또한 특정 고도기술 자산의 제조 등과 같은 활동에 대해 공제율 약 18%까지 상향 조정함

○ 비용불공제 및 비용공제율의 상향 조정 효과가 상쇄되므로 본 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재정적자는 변동 없이 유지될 것임

❑ R&E(Research and Experimentation)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제도를 영구화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을 장려하고 연구 분야에 꾸준히 투자하는 기업에 보상할 예정임

○ 현행 제도에서 납세자는 과거 평균 3년간 지출한 비용의 50%를 초과해서 지출한 특정 연구개발비의 14%를 R&E 세액공제액으로 선택할 수 있음

〈표 Ⅰ-4〉 국내 투자촉진 및 일자리 창출

(단위: 백만달러, %)

회계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Total 2013-2017	Total 2013-2022
국내 투자 및 고용 증대를 위한 세제유인과 해외 일자리 이전 제한규정의 신설	-	8	8	8	8	8	9	10	10	10	11	40	90
제조지역 세액공제의 신설	-	19	103	242	394	517	617	702	732	644	456	1,275	4,426
특정 제조활동에 대한 비용공제 제한 및 고도기술에 대한 공제혜택 증가	-	-	-	-	-	-	-	-	-	-	-	-	-
R&E 세액공제율의 인상 및 영구 적용	4,012	7,048	7,834	8,677	9,553	10,441	11,314	12,157	12,991	13,832	14,688	43,553	108,535

주: 음수는 재정적자 감소를 의미함
자료: 〈http://www.whitehouse.gov/omb/budget/Overview〉 참조

○ 본 예산안에서 세액공제율을 현행 14%에서 17%로 3%p 인상하고 제도를 영구화하는 방안을 발표함

○ 본 예산안의 적용으로 향후 10년 동안 1,090억달러에 상당하는 세금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라.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조세 감면

❑ 특정 자격을 갖춘 소규모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자본이득세를 영구적으로 폐지함

○ 이 예산안은 특정 소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자본이득세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대통령의 제안을 영구히 한 것임

- 이는 소규모기업 일자리법(Small Business Jobs Act)의 일부로서 시행되어 왔고 2011년 12월 감세 법안에 대한 타협안으로서 확장 시행된 바 있음

○ 또한 투자소득은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의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킴

○ 자본이득세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투자자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가능하게 함

○ 본 제도를 영구화할 경우 소규모기업 투자자에게 향후 10년간 80억달러의 세제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함

❑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개시비용의 공제한도 금액을 두 배로 인상함

○ 현행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개시비용이 사업개시연도에 5천달러까지 비용으로 공제되고 남은 잔액은 이후 분할 상각하여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산안에서는 사업개시연도에 사업개시비용을 1만달러까지 즉시 비용화할 수 있도록 함

- 2010년 한 해 동안만 사업개시비용의 첫 해 상각한도를 1만달러로 인상한 바 있으며 예산안은 이를 영구화하자는 방안임

○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소규모 사업자는 향후 10년간 30억달러의 혜택을 얻을 것으로 예상함

❑ 소규모 사업자의 건강보험 세제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액공제 계산방식을 간소화함

○ 의료개혁법(The Affordable Care Act)에서는 2010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를 창설한 바 있음

- 의료개혁법에 의하면, 자격을 갖춘 고용주는 자기 고용인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지급보험료의 25%(2014년까지 50%로 상향 예정) 상당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 개정안에서는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고용주의 범위를 확대함

- 고용 근로자수 기준이 기존에는 '25인 이하' 였으나, 개정안에서 '50인 이하' 로 변경함

○ 또한 개정안에서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위한 요구조건을 폐지하여 계산방식을 간소화함

- 자격을 갖춘 고용주가 각각의 고용인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의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은 폐지하였고, 또한 고용주의 입장에서 평균 건강보험료에 근거

한 세액공제금액 상한선 기준도 폐지함

○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경우 소규모 사업자에게 향후 10년간 140억달러의 세제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됨

〈표 Ⅰ-5〉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조세 감면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

(단위: 백만달러, %)

회계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Total	
												2013-2017	2013-2022
소규모기업 투자에 대한 자본이득세 면제	-	-	-	-	-	214	619	1,018	1,525	2,079	2,536	214	7,991
사업개시비용 공제한도 확대	76	322	316	313	311	310	307	302	299	297	296	1,572	3,073
건강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및 간소화	512	1,077	1,777	2,168	1,987	1,672	1,409	1,215	1,101	981	774	8,681	14,161

주: 음수는 재정적자 감소를 의미함
자료: 〈http://www.whitehouse.gov/omb/budget/Overview〉 참조

마. 부유층 · 고소득층에 대한 부시정부의 감세법 일몰종료

❑ 연간 25만달러의 소득을 얻는 가구에 대한 소득세 감세 정책을 종료하고 유산세 및 증여세 수준을 상향 조정함

○ 과거 10년 동안 미국의 최고 부유층에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시행하였음

- 소득이 100만달러가 넘는 가구에 적용되는 이러한 감세정책의 규모는 연평균 10만달러 이상이며 이 제도의 계속 적용으로 인해 조세체계의 불공정이 야기되어 현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 2010년말 대통령은 중산층에 대한 감세정책의 유지 및 경기부양을 위한 타협안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일시적인 감세확대 정책을 받아들였으나 이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고소득층 감세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차입을 늘리거나 중산층에 대한 증세를 하거나 노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축소하여야 함

○ 개정안은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연간 25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는 부유층 가구에 대해 2001년 및 2003년에 시행되었던 소득세 감세정책을 종료하는 방안을 제안함

- 또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연소득 기준 기혼 납세자의 경우 25만달러 이상, 독신인 경우 20만달러 이상일 경우 일반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함

○ 또한 유산세 및 증여세를 2009년 수준으로 회복시켜 대규모 유산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함

○ 2012년 말에 이러한 감세정책을 종료할 경우 향후 10년간 1조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의 증가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항목별 비용공제와 소득비과세의 수준을 과세소득의 28%로 제한하여 조세지출을 제한함

○ 본 개정안은 고소득 가구에 대한 조세지원을 28% 이하 수준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 이 수준은 레이건 행정부 후반기 수준과 동일함

- 본 개정안은 미국 일자리법(The American Jobs Act)에 입법근거를 둠

○ 규제대상이 되는 주요 항목으로는 비과세되는 국채나 지방채 이자, 비과세되는 퇴직연금 계정 분담금, 비과세되는 사용자 부담분 건강보험료, 국내 생산활동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비용공제항목 등이 있음

○ 이 제도의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580억달러의 재정수지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 헤지펀드 매니저와 이와 유사한 투자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도한 투자이익분배금(carried interest)[10]에 대한 조세상 허점(loophole)을 제거함

○ 기존에 과세하기가 어려웠던 투자파트너십의 투자이익분배금(carried interest)에 대하여 개정안에서는 자본이득세와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함

10) 'Carried interest'란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과 같은 변형적인 투자형태에 있어서, 해당 매니저가 파트너십에 기여한 부분보다 초과하여 지급받게 되는 투자펀드의 이익분배금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함

- 다만, 이 적용세율은 미국 중산층이 그들의 소득에 대해 부담하는 세율보다는 낮음

○ 이러한 제도의 개선으로 향후 10년간 130억달러의 재정수지 증가가 예상됨

〈표 Ⅰ-6〉 부유층·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철회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

(단위: 백만달러, %)

회계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Total	
												2013–2017	2013–2022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 감세정책 종료	-	-56,333	-51,066	-62,901	-76,413	-85,895	-91,516	-97,063	-102,792	-109,033	-115,850	-332,608	-848,8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105	-1,132	-10,264	-11,735	-12,871	-14,123	-15,510	-16,996	-18,539	-20,243	-21,881	-50,125	-143,294
고소득층 비용공제 및 비과세 한도 축소	-	-27,096	-43,935	-47,457	-51,764	-57,015	-62,263	-66,736	-71,195	-75,899	-80,837	-227,267	-584,197
Carried Interest에 대한 과세	-	1,287	-1,935	-1,918	-1,703	-1,426	-1,165	-1,106	-1,171	-1,017	-768	-8,269	-13,496
회사 전용기 등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폐지	-	-54	-174	-268	-304	-367	-376	-278	-162	-119	-114	-1,157	-2,206

주: 음수(-)는 재정적자 감소를 의미함
자료: 〈http://www.whitehouse.gov/omb/budget/Overview〉

❑ 회사 전용기나 일반 여행용 비행기 구입에 대한 특별 감가상각제도를 폐지함

○ 현행법에서는 상업적인 목적이나 계약상 여객,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비행기의 경우 7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그 외 비행기는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는 것으로 규정함

○ 개정안에서는 회사 전용기나 일반 여행용 비행기의 경우 적용되었던 특별 감가상각제도(5년 상각)를 폐지하고 7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도록 함

○ 이러한 개정안의 효과는 향후 10년간 2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바. 국제거래 관련 조세제도 개정

❑ 무형의 자산이나 소득에 대한 이전가격조정행위(Transfer Pricing Abuse)에 대한 규

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 오바마 행정부는 자산이나 소득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이전가격조정행위의 유인을 제거하고자 함

- 이전가격조정행위란 다국적기업이 낮은 가공의 가액으로 자산 등을 해외의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자회사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이전가격조정행위는 정당한 가액으로 거래했을 경우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회피함으로써 이익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 개정안은 저작권이나 상표권과 같은 무형의 자산 등을 해외에 이전함으로써 얻는 과도한 이익은 미국에서 과세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230억달러 이상의 재정적자 감소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됨

〈표 Ⅰ-7〉 국제거래 관련 조세제도 개정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

(단위: 백만달러, %)

회계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Total	
												2013-2017	2013-2022
무형자산 국제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	-1,498	-2,653	-2,621	-2,550	-2,460	-2,375	-2,290	-2,231	-2,178	-2,117	-11,782	-22,973
차입을 통한 해외투자 시 이자비용 공제 연기	-	-3,487	-5,926	-6,156	-6,420	-6,693	-3,436	-1,215	-1,258	-1,306	-1,356	-28,632	-37,253
여타 국제조세 관련 개정	-	-4,505	-7,660	-8,017	-8,410	-8,812	-9,203	-9,576	-9,948	-10,371	-10,794	-37,454	-87,296

주: 음수(-)는 재정적자 감소를 의미함
자료: 〈http://www.whitehouse.gov/omb/budget/Overview〉

❑ 차입을 통한 해외투자 진행 시 차입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를 10년간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함

○ 개정안에서는 차입 해외투자에 따른 조세이득을 제거하기 위해 해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이자비용 공제를 향후 10년간 연기함

- 현행법에서는 미국에서 자금을 차입한 후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 사업비용으로서 이자비용의 공제가 허용됨
- 이러한 기업이 해외투자에 대해 미국세금을 거의 또는 전혀 부담하지 않더라도 이자비용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부당한 점이 있음

○ 이러한 국제조세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370억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캐나다 2012 예산안

[조세동향 12-04호]

❑ 캐나다 재무부가 2012년 3월 29일에 발표한 2012 예산안은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장기적 번영을 목표로 기존의 감세정책 흐름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2009년부터 시행되었던 기존 Canada' s Economic Action Plan(CEAP)을 유지할 계획임

○ 작년도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에 의한 지출규모는 750억캐나다달러였으며, 향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낭비적 요소 없이 예산이 지출될 계획임

❑ 2012년 예산안에서는 CEAP를 통해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공공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개발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부적 계획을 갖고 있음

○ 기업경영에 있어 혁신적, 창조적 일자리 창출

○ 책임감 있게 자원개발을 수행

○ 사업의 번창을 위한 자유롭고 열린 교역환경 마련

○ 연구 및 교육훈련을 통한 우수한 인재양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

○ 원주민의 완전한 경제적 참여 유도

○ 신속하고 유연한 경제적 이주정책 건립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과 퇴직 후의 안정성 보장
○ 세계적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함

❑ 정부는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기적으로 예산의 균형을 맞추고 부채규모를 줄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
○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정부부채수준을 370억캐나다달러까지 낮춘 바 있고 현재까지 낮은 순부채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정부의 재정적자 수준은 계속해서 감소할 예정이며 2015-2016연도에는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표 Ⅰ-8〉 CEAP 실행 이후의 정부 재정수지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33.4	-24.9	-21.1	-10.2	-1.3	3.4	7.8

자료: 캐나다 정부, Budget 2012, 〈http://www.budget.gc.ca/2012/rd-dc/brief-bref-eng.html〉

가. 클린에너지 관련 설비에 대한 자본비용공제 확대 등 법인세 개정

❑ 클린에너지(Clean Energy)의 발생 및 보존설비에 대하여는 가속(50%)의 자본비용공제(Capital Cost Allowance)가 적용되는데, 예산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비투자를 그 대상에 포함시킴
○ 폐기물연료의 열에너지 설비
○ 주로 폐기물연료의 열에너지 설비에 의해 발생한 열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에너지 공급 시스템 장비
○ 전기나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농업분야에서 생산된 설비의 잔여물을 사용하는 장비

❑ 캐나다에 소재한 특정 광물자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광비용에 대해 법인에 있어 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바, 2012년 예산안에서는 동 세액공제제도를 단계적으

로 폐지하는 것을 제시함

○ 세액공제율은 2012년까지는 10%, 2013년에는 5%이며, 2014년 이후에는 세액공제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대서양 지방 및 Gaspe 반도 인근 지방에서 주로 농림어업, 광업, 유전 및 가스산업, 제조 및 가공업 등에 사용하는 신규 건물, 기계설비 등의 적격자산 취득에 대해 10%의 세액공제(Atlantic Investment Tax Credit)가 적용되는 바, 예산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음

○ 유전 및 가스산업, 광업과 관련된 세액공제는 향후 4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함

○ 투자 적격자산의 범위에 전기발생설비, 클린에너지 발전설비도 포함시킴

❑ 연구개발활동(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과 관련한 조세 프로그램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

○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에 있어서 세액공제율을 20%에서 15%로 축소함

○ 연구개발 비용공제 및 투자세액공제 대상 항목에 있어서 자본적 지출 성격의 비용(Expenditures of a Capital Nature)을 제외함

○ 연구개발활동에 배부되는 간접비용의 계산에 있어서 간편대용법(Simplified Proxy Method)을 사용하는 경우, 그 적용률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킴

- 현행 65%를 2012년에는 60%, 2013년 이후에는 55%로 축소

○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비용기준 산정 시 정상적인 연구개발 계약으로부터의 이익요소를 제외함

❑ 소득세법(Income Tax Act) Sec 88[11] 규정과 Sec 100[12] 규정을 우회하여 적용받기 위하여 파트너십(Partnership) 구조가 사용되는 것을 막는 규정을 마련함

○ 파트너십 지분의 발생 이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Sec 88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11) 캐나다의 내국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회사가 자회사와의 수직합병이나 자회사의 청산을 통하여 자회사의 특정 고정자산(Capital Asset)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하여 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임

12) 파트너십이 소유한 소득형자산(Income Asset)은 납세자에 의해 파트너십 지분이 비과세실체(Tax-Exempt Person)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만 완전 과세가 가능하다는 내용임

- 이러한 규정은 소득형자산(Income Asset)이 파트너십에 의해 직접 소유되거나, 다른 파트너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경우에 적용됨

○ 소득세법 Sec 100상의 과세가능 파트너십 지분의 거래 상대방의 범위에 비과세실체(Tax-Exempt Person)뿐만 아니라 비거주자(Non-Resident Person)도 포함시킴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TP) 조정에 따른 처분 성격과 사후관리를 명확히 함

○ 비거주자와 비정상가격(Non Arm's Length Price)으로 거래한 캐나다 내국법인은, 그 비거주자가 캐나다 내국법인의 주주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초과지급한 부분에 대해 원천징수 목적상 배당으로 처분함

○ 캐나다 내국법인에 배당처분이 일어났을 경우, 해당 비거주자는 배당으로 처분된 조정금액 상당액을 캐나다 내국법인에 돌려주어야 함

❑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의 일부 규정을 완전성과 공정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개정함

○ 부채-자본 비율을 2 : 1에서 1.5 : 1로 변경함

○ 캐나다 거주법인이 구성원으로 있는 파트너십의 부채에 대하여도 과소자본세제 규정을 적용함

○ 과소자본세제하에서 허용되지 않는 이자비용을 원천징수 목적상 배당으로 취급함

○ 캐나다 거주법인이 그가 지배하는 국외 관계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특정 상황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함

❑ 소득세법상 침식기준 규정(Base Erosion Rules)[13]의 내용을 일부 개정함

○ 캐나다 은행의 영업상 해외 계열사의 초과 유동성을 이용하는 경우 캐나다 은행의 세부담을 덜어줌

○ 은행의 영업과정에서 독립된 고객과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특정 유가증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침식기준 규정이 부적절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함

13)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캐나다 납세자의 과세소득이 축소될 수 있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임

나. 배당유형 지정신고 규정 개선 등 소득세 개정

❑ 배당세액공제(Dividend Tax Credit, DTC) 적용을 위한 배당유형 지정신고(Designation) 규정을 개선함

○ 배당세액공제[14]는 고율 배당세액공제(Enhanced DTC)와 표준 배당세액공제(Regular DTC)로 나누어지며[15], 이는 배당의 소득원천에 따라 결정됨

- 일반세율 적용 소득재원(General Rate Income Pool)으로부터의 배당[16]에는 고율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됨
- 저세율 적용 소득재원(Low Rate Income Pool)으로부터의 배당에는 표준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됨

○ 예산안에서는 법인의 배당금 지급 시, 총배당금 중 고율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배당금 비율을 임의로 지정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음

- 예전에는 보다 정확한 구분을 요구하였으며 과도한 고율 배당세액공제 대상 신고분에 대하여 이에 20%의 특별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배당소득 구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

○ 또한 예산안에서는 고율 배당세액공제 적용 대상 배당금 지정신고에 대해 지연신고도 가능하도록 허용함

- 예전에는 신고기한 내에 지정신고하지 않는 경우 실제로 배당의 원천이 일반세율 적용 소득재원으로부터의 배당이라 하더라도 표준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었으나, 예산안에서는 지연신고하더라도 실질에 맞게 인정해 줌

❑ 임계점[17]을 넘는 의료비용 지출액의 15%를 공제해 주는 의료비 세액공제(Medical Expense Tax Credit) 대상에 혈액응고 방지를 위한 혈액응고 감시장치 기기(Blood

14) 법인의 소득은 법인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동 소득이 개인에게 배당으로 지급될 때 주주단계에서도 과세되는 이중과세문제가 발행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15) Enhanced DTC와 Regular DTC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배당세액공제 금액의 크기를 결정함. 즉, 배당세액공제 금액은 배당소득에 가산(Imputation)되지만, 동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 납세자 입장에서는 Enhanced DTC가 보다 유리함
16) 이때의 배당을 특히 Eligible Dividend라 함
17) 납세자 순소득의 3%와 2,109캐나다달러 중 작은 금액

Coagulation Monitors) 구입비가 포함됨

❑ 등록장애인에 대한 저축 계획(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s, RDSP)제도[18]에 대한 개정을 제안함

○ 계약능력이 불확실해질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해 그 장애인의 특정 가족 구성원이 RDSP의 보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함

○ RDSP로부터 인출이 일어날 때 비례적으로 상환이 일어나도록 개정함

○ RDS 인출금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규정을 변경함

○ 등록교육 저축계획(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기금에서 발생한 투자소득을 비과세(혹은 과세이연)가 적용되는 RDSP 기금으로의 전입을 가능하게 하였음

❑ 도관주식(Flow-through Share)에 대한 광물투자세액공제(Mineral Exploration Tax Credit)를 1년 더 연장하여 2013년 3월 31일 이전 계약분까지 가능하게 함

○ 도관주식 출자를 통한 투자자들의 캐나다 광물 개발 활동은 관련 비용을 그들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해 줌

○ 또한 도관주식에 투자한 개인에게는 캐나다 소재 특정 광물의 탐사개발 활동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15%의 광물개발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집단 질병 및 사고 보험계획(Group Sickness or Accident Insurance Plans)에 대하여, 그 분담금은 고용주가 납부하여야 하며, 단 분담금이 근로자의 임금손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함

❑ 퇴직보상계약(Retirement Compensation Arrangements)[19]과 관련하여 일부 규정을 변경함

○ 현행 퇴직보상계약은 퇴직연금계획(Registered Pension Plan)하에 허용된 연금 혜택 한도수준을 초과하여 고소득 근로자에게의 연금 지원으로 사용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18) RDSP는 장애인 세액공제(Disability Tax Credit) 적용 대상 장애인을 수혜자로 하는 기금 제도임
19) 소득세법하의, 고용주가 지원하고 있는 퇴직저축제도의 한 유형임

○ 개정안에서는 퇴직보상계약의 비정상적인 처리에 따른 이익 발생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칙을 마련함

○ 또한 퇴직보상계약에 속한 자산의 가치손실이 발생할 경우 퇴직보상계약 관련 조세환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함

❑ 근로자 이익공유 계획(Employees Profit Sharing Plans, EPSP)[20]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분담금이 과도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규정을 마련함

○ EPSP는 회사 구성원에게 이익을 공유하는 수단으로서도 사용되지만, 한편으로는 사업경영자에게 있어 자신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이용되기도 함

○ 예산안에서는 이러한 과도한 분담금의 유인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이익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특별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규정을 제안함

- 여기서 '과도한 이익'이란, 신탁관리인이 특정 근로자에게 당해 근로자가 그 해 고용주로부터 받은 급여총액의 20%를 초과하여 분배한 금액을 의미함

❑ 캐나다 총독(Governor General of Canada)에 대한 급여 비과세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생명보험계약의 저축계정(Savings Component of a Life Insurance Policy)에서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될 수 있는데, 예산안에서는 비과세 테스트에 관한 세부 변경사항을 제안함

❑ 노령층 생활안정지원(Old Age Security, OAS)과 소득보조(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 혜택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것을 제안함

○ 이러한 변경사항은 2023년 4월에 시작하여 2029년 1월에는 전면 시행될 것임

○ 추가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안함

- 더 높은 금액의 혜택을 얻기 위해 OAS 적용을 차후로 미루는 선택권 부여
- 공동등록연금계획(Pooled Registered Pension Plan)과 관련된 퇴직소득제도 지원

20) 일종의 신탁계약으로서 동 신탁에 대한 고용주의 분담금은 세금목적상 비용 공제가 가능하며, 신탁관리인은 매년 고용주의 모든 분담금 및 신탁으로부터의 이익 등을 수혜자에게 분배하여야 함

계획

- 공무원 및 국회의원의 연금 계획에 대한 유지가능성, 공정성, 재무적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

❑ 캐나다 거주자가 일정 조건을 갖추어 해외에 취업하는 경우, 10만캐나다달러를 한도로 하여 해외취업세액공제(Overseas Employment Tax Credit)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동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함

○ 2013년부터 향후 4년 동안 단계적 폐지를 제안함

다. 의료부문의 면세 · 영세율 범위 확대 등 상품용역세 및 종합매출세 개정

❑ 발전하는 의료서비스 산업 상황을 반영하여 의료보건용역, 약제 및 의료기기에 대한 상품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및 종합매출세(Harmonized Sales Tax, HST)의 적용규정을 정비함

○ 기존에는 의사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만 면세를 적용하였으나, 약사의 진단 서비스 등의 전문가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하기로 함

○ 안과 의사에 의한 처방뿐만 아니라, 지방법률에 의해 자격을 갖춘 안경사의 처방에 따른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텍트렌즈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함

○ 혈액응고 감시기기 및 협심증 치료제(Isosorbide-5-mononitrate)도 영세율 항목에 추가함

❑ 자선단체 및 적격한 비영리 문학단체가 기증을 위해 구입하는 도서관련 GST/HST에 대해 환급을 허용하는 규정을 제시함

○ 현행은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GST/HST의 환급이 불가능하나 언어능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규정을 제정한 것임

❑ 소규모 사업자 및 소규모 공공서비스기관이 납부할 GST/HST의 금액 계산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간편회계(Streamlined Accounting)[21]를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임계점

을 두 배로 늘려 보다 널리 이용할 수 있게 함

○ 연간 과세소득 기준을 20만캐나다달러에서 40만캐나다달러로 상향 조정함

라. 세무 기획자에 의한 등록 및 보고의무 강화 등 기타 세제조치

❑ 조세감면혜택(Tax Shelter)에 대하여 세무 기획자(Promoter)에 의한 등록과 보고의무를 강화함

○ 규정되지 않은 절세수단을 동원하여 증여세 혜택을 얻게 한 세무기획자에 대해 가산세 적용 시 그 계산방법을 변경함

- 현행은 500캐나다달러와 조세감면혜택과 관련하여 세무 기획자가 수령한 대가의 25% 중 큰 금액이나, 개정안에서는 이전 규정하의 금액과 증여된 재산가액의 25%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을 제시하여 징계를 보다 강화함

○ 매년 의무적으로 하는 조세감면혜택 등록에 대한 정보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세무기획자에 대하여 새로운 가산세 제도를 도입함

- 현행은 미신고에 대하여 100캐나다달러 또는 신고지연일수에 25캐나다달러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규정[22]만을 두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추가로 국세청의 요구에 의한 특정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로부터 조세감면혜택과 관련하여 받은 대가를 누락 신고한 경우에 세무기획자가 수령한 대가의 25%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 적격한 외국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특정 외국 자선단체의 등록과 관련된 규정을 변경함

○ 현행은 외국 자선단체가 기부금 적격단체임을 캐나다에 등록하여야 함

○ 예산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는 외국 자선단체에 대하여 캐나다 국세청이 심사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만 적격 기부단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함

- 재난 구조나 긴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구조 활동

---

21) 이 제도하에서 납세자는 과세소득에 특정한 납부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하게 됨

22) 단, 2,500캐나다달러를 한도로 함

- 캐나다의 국가적 이해를 위한 활동

❑ 정치적 활동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자선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규정을 마련함

○ 정치적 활동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함

○ 국세청에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이행준수 감시를 보다 강화함

Ⅱ 유 럽

1. 네덜란드 2012 조세계획안

[조세동향 12-01호]

❑ 네덜란드 하원은 2011년 11월 17일에 주식인수 관련 이자비용의 공제한도 규정 신설,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및 협동조합 배당에 대한 규정의 개정이 포함된 2012년 조세계획안을 승인함

○ 2012년 조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이자비용의 공제 한도 규정 신설

❑ 과도하게 부채를 조달하여 기업을 인수할 때, 피인수회사가 인수회사와 함께 네덜란드 세법상 연결그룹에 포함된 경우 관련된 이자비용은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는 규정을 신설함

○ 부채의 조달은 특수관계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됨

○ 인수회사의 이자비용은 인수회사의 과세소득에서만 공제될 수 있음

❑ 인수회사가 공제할 수 있는 이자비용의 한도: 다음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① 최초로 연결그룹에 포함된 연도에는 인수 시 부담하는 부채 중 인수대가의 60%를 초과하는 분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이후 연도에 대해서는 7년 경과되어 25%가 될 때까지 5%씩 감소

② 1백만유로

나.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네덜란드 회사나 사업에 대한 실질적 지분(통상적으로 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외국법인은 ①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주주에 의해서 수행되는 사업에 대한 지분인 경우, 또는 ② 네덜란드 내국법인에 대한 실질적 지분을 네덜란드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경우, 네덜란드의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음

다. 협동조합 분배이익의 배당소득 인정

❑ 2012 조세계획에 따르면, 조합원이 능동적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상황에는 네덜란드 협동조합(cooperative)이 분배하는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함

- ○ 능동적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상황이란, 조합원이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네덜란드의 배당소득 원천징수를 회피할 목적을 갖고 협동조합을 중간지주회사로써 사용하며 조합이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상황을 말함
-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네덜란드 협동조합이 분배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2. 덴마크 법인세 개정법안

[조세동향 12-05호]

❑ 덴마크 정부는 2012년 4월 25일에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제한, 법인세 공동납부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인세 개정법안을 의회에 제출함

가.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제한

❑ 현행 법인세법상 덴마크 법인은 이월결손금을 금액 제한 없이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 가능함

❑ 개정세법에 따르면 750만덴마크크로네(약 133만달러)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이 전액 공제 가능한 반면, 이를 초과하는 과세표준은 60%까지만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게 됨

○ 그러나 개정 후에도 이월공제 기한에는 여전히 제한이 없음

❑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제한은 2012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임

나. 법인세 공동과세제도 개정

❑ 공동과세제도(joint taxation) 또는 그룹과세제도(group taxation)란 동일 그룹 내 법인들에 대해 법인세를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그룹 내 일방 법인에서 발생한 손실을 타방 법인의 이익과 상쇄할 수 있는 제도임

❑ 덴마크는 내국법인 및 국내고정사업장에 대해 공동과세제도를 적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그룹 내 외국법인 및 국외고정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동과세제도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현 공동과세제도하에서 그룹 내 개별법인은 그룹의 총법인세 납부세액 중 각 법인에 할당된(allocated) 세액만큼 납세의무를 짐

❑ 또한 공동과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이 해외에 배당, 이자, 로열티 등을 지급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 경우 배당 등을 지급한 당해 법인만이 원천징수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짐

❑ 개정세법에 따르면 공동과세제도하에서 그룹 내 법인은 그룹의 총 법인세 납부세액에 대해 개별적으로도 납세의무를 부담(joint and several liability)하게 됨

○ 다만, 과세연도 말 그룹이 100% 미만으로 소유하는 자회사(minority companies)는

모회사 또는 100% 소유 자회사들로부터 납부세액을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만 2차적 납세의무(secondary liability)를 부담함

❑ 또한 공동과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이 해외에 배당 등을 지급한 경우 배당 등을 지급한 당해 법인뿐만 아니라 그룹 내 다른 법인들도 원천징수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됨

❑ 이는 2012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임

다. 납세정보 공시

❑ 조세투명성 향상을 위해 덴마크 내국법인, 고정사업장 및 덴마크에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납세정보를 외부에 공시할 것이 요구됨

○ 이는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공시될 납세정보에는 과세표준, 이월결손금, 법인세 납부세액 등이 포함됨

○ 법인이 공동납부제도를 적용받을 경우, 공동납부 법인들의 납세정보를 총괄한 자료를 공시할 것이 요구됨

라. 이전가격문서에 대한 외부감사 요구

❑ 덴마크 과세당국은 일부 내국법인에 대해 이전가격문서에 대한 외부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 이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이전가격문서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음

○ 유럽연합 또는 유럽경제지역 역외 국가 중 덴마크와 이중과세협정(double taxation treaty)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와 특수관계거래를 수행한 법인

○ 직전 4년 연속 평균 영업손실이 발생한 법인

❑ 감사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는 외부감사인이나 이전가격문서 구비를 지원한 자는 이전가격문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없음

3. 벨기에 2012 예산안

[조세동향 12-01호]

❑ 벨기에는 2011년 12월 30일에 2012 예산안을 관보(Official Gazette)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함

○ 2011년 11월 26일에 벨기에 정당들은 재정적자를 GDP의 2.8%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011년 예산 대비 약 113억유로를 삭감하는 내용의 2012 예산안에 합의함

○ 이 예산안은 2011년 12월 19일 의회에 제출된 후 논의를 거쳐 12월 30일에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2012 예산안의 세제조치는 주식관련 자본이득의 소득공제 요건 강화, 과소자본과세제도 및 가상이자공제제도의 개정, 특정 개인소득에 대한 부가세(surtax) 추가 징수, 원천징수세율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함

가. 자본이득 소득공제의 요건 강화 등 법인세 개정

❑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자본이득을 100% 소득공제받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보유기간 요건이 신설됨

○ 현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으로부터 실현된 자본이득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은 주식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자본이득을 100%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 공제요건: 자본이득이 과거 당해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자본손실을 초과해야 함
- 만일 공제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자본이득은 33.99%의 세율로 과세됨

○ 세법 개정으로 주식보유기간 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공제요건을 충족한 주식을 최소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당해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100% 소득공제가 허용됨

- 공제요건은 충족되었으나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자본이득은 33.99%가 아닌 25%의 세율로 과세됨

❑ 과소자본과세제도의 과소자본 기준비율이 7배에서 5배로 축소되고, 규제대상 차입금의 범위가 변경됨

○ 과소자본과세제도(thin capitalization)란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국가에 위치한 모회사 등으로부터 출자가 아닌 차입을 받아 배당 대신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당해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의 세부담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 현행 제도는 면세 또는 저세율 국가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 출자지분의 7배(과소자본 기준비율)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있음

○ 개정된 과소자본과세제도에 따르면 동일 그룹 내 기업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intra-group loans)이 출자지분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됨

- 그룹(group)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분참여로 인해 공통의 지배관계에 있는 관계회사를 의미함
- 차입금이 면세 또는 저세율 국가로부터 조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 그룹 내 기업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규제대상으로 함

❑ 가상이자공제제도(Notional Interest Deduction, 이하 'NID')의 이자율이 인하되고, NID 공제액의 이월공제가 폐지됨

○ NID란 자기자본 투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투자된 자기자본에 대한 가상 이자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세제혜택임

- 자기자본에는 위험자본, 주식 프리미엄, 예치금, 이월액, 평가차액, 지원금 등이 포함됨
- NID 공제액 = 자기자본 × 이자율

○ 2011년에는 3.425%(중소기업은 3.925%)의 이자율이 적용되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2012~2014년에 대한 이자율은 3%(중소기업은 3.5%)로 인하됨

○ 현행 세제는 NID 공제액의 이월공제를 7년간 허용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세제에 따르면 2012년부터 NID 공제액의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 다만,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이월공제액은 당해 법인의 이월결손금 및 기타 소득공제액 차감 후 과세소득(최초 1백만유로 제외)의 60%를 한도로 7년간 공제 가능함

나. 부가세 추가 징수 등 소득세 개정

❑ 연 2만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4%의 부가세(surtax)가 추가 징수됨

○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동산(動産)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연 2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소득금액에 대해 4%의 부가세가 추가 징수됨

- 현행 적용세율인 15% 또는 21%에 각각 4%의 세율이 가산됨

❑ 스톡옵션으로부터 발생한 과세소득의 계산방식이 개정됨

○ 종업원 등이 스톡옵션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종업원 등은 스톡옵션으로 인한 이익을 산정하여 그 스톡옵션의 부여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의 과세소득에 포함해야 함

○ 현행 소득세법상 종업원 등은 스톡옵션 부여시점에 그 스톡옵션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 공정가치의 15%를 과세소득에 포함해야 되는데, 2012 예산안에 따라 이 비율이 18%로 인상됨

다. 원천징수세율 인상

❑ 특정 주식의 배당금에 적용되던 15% 원천징수세율이 21%로 인상됨

- ○ 일반적인 배당 원천징수세율은 25%이나, ① 1994년 이전에 발생된 주식, ② 1994년 이전에 개인적 현금 기여(private cash contribution)의 대가로 받은 주식 및 ③ UCITS[23] 펀드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15%의 특별세율이 적용됨
- ○ 세법 개정으로 15%의 특별 배당 원천징수세율이 21%로 인상됨
- ○ 반면, 일반 배당 원천징수세율은 변동 없이 25%로 유지됨

❑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됨

- ○ 단, 2011년 11월 및 12월에 발생된 벨기에 주 채권(Belgian state bonds)에 대한 이자는 제외됨

라. 부가가치세율 ·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 간접세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던 공증비용과 집행관 수수료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됨

❑ 디지털 텔레비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12%에서 21%로 인상됨

❑ 증권거래세(stock exchange tax) 세율이 인상됨

- ○ 벨기에는 증권의 매입 또는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부과함
- ○ 세법 개정으로 증권거래세 표준세율은 0.17%에서 0.22%로, 경감세율은 0.07%에서 0.09%로 각각 인상됨

23) Undertaking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의 약자로서, 유럽위원회가 제정한 투자펀드 규제 지침(Directives)임

4. 스페인 2012 개정세법

[조세동향 12-01호]

❑ 스페인 관보(Official Gazette)는 2011년 12월 31일에 개인소득세율 인상, 주택구입 세액공제의 확대적용,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및 원천징수세율 인상 등의 개정사항을 포함한 개정세법(Royal Decree-law 20/2011)을 공포함

○ 2012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중간예납세액 산정방법의 적용기한 연장 등 법인세 개정

❑ 2011년도에 적용된 중간예납세액 산정방법의 적용기한이 2012년까지 연장됨

○ 스페인 법인은 2012년에도 2011년과 동일하게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택하여 산정한 세액을 과세기간 중 중간예납해야 함

① 중간예납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가장 최근 과세연도 납부세액의 18%

② 당해 과세연도 경과기간에 발생한 소득의 일정비율(세율의 5/7)[24]

❑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경감세율 적용기한이 2012년까지 연장됨

○ 2012년에도 2011년과 동일하게 중소기업에 대해 20~25%의 법인세 경감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 다만, 순수익(net revenue)이 5백만유로 미만이고, 평균 종업원 수가 25명 이하인 중소기업만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나. 소득세율 인상 등 소득세 개정

❑ 2012년 및 2013년의 개인소득에 대한 주세(state tax)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소득세율이 다음의 표와 같이 인상됨

24) 2011년 세율(30%)을 기준으로 약 21%임. 단, 2011~2013년의 기간 동안에는 매출액이 2천만~6천만 유로 이상인 법인에 대해 24%, 매출액이 6천만유로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 27%가 적용됨

〈표 Ⅱ-1〉 스페인의 소득세율 개정(2011~2013년)

(단위: 유로, %)

과세소득 구간	세율	
	2011년	2012~2013년
0 ~ 17,707.20	24	24.75
17,707.21 ~ 33,007.20	28	30
33,007.21 ~ 53,407.20	37	40
53,407.21 ~ 120,000.20	43	47
120,000.21 ~ 175,000.20	44	49
175,000.21 ~ 300,000.20	45	51
300,000.21 ~	45	52

자료: IBFD, 〈http://www.ibfd.org〉

❑ 일부 개인납세자에게만 허용되던 주택구입 세액공제가 2012년부터 모든 개인납세자에게 확대 적용됨

○ 2011년까지는 연 과세소득이 24,107.20유로 이하인 개인납세자에 대해서만 주택구입 소득공제가 허용되었으나, 2012년부터 이러한 소득요건이 폐지됨

- 주택구입 세액공제란 개인납세자가 거주할 주택을 구입 또는 복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9,040유로를 한도로 15%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세제혜택임

❑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인상됨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고정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제외)에 대한 소득세율이 24%에서 24.75%로 인상됨

○ 배당, 이자 및 자본이득(고정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제외)에 대한 소득세율이 19%에서 21%로 인상됨

○ 국내 고정사업장이 EU 국가를 제외한 외국의 본점에 송금한 세후순이익에 부과되는 지점세(branch profits tax) 세율이 19%에서 21%로 인상됨

다. 원천징수세율 인상

❑ 2012년 및 2013년에 대해 일부 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이 인상됨

- ○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9%에서 21%로 인상됨
- ○ 이사 성과급(director's fees)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35%에서 42%로 인상됨
- ○ 자산 및 권리의 배정에 따른 소득(예: 부동산의 리스, 대여, 기술지원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9%에서 21%로 인상됨
- ○ 스포츠경기, 대회, 추첨식 복권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9%에서 21%로 인상됨

5. 영국 2012회계연도 예산안 및 2012 재정법

[조세동향 12-04호]

❑ 영국 재무장관(Chancellor of the Exchequer)은 2012년 3월 21일에 '2012회계연도 예산안(Budget for 2012~13)'을 의회에 제출함

- ○ 예산안은 영국의 경제정책 목표인 산업과 성장의 장려 및 투자의 촉진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세제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 2012년 3월 29일에는 2012 재정법(Finance Bill 2012)이 의회에 제출됨

- ○ 2012 재정법에는 2012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세제조치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세제조치는 향후 세법개정을 통해 적용될 예정임

❑ 2012회계연도 예산안 및 2012 재정법에 포함된 주요 세제조치로는 법인세율의 인하, 은행세율 인상,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부가가치세 면세점(threshold) 인상 등이 있음

가. 법인세율 인하 등 법인세 개정

❑ 현행 26%인 법인세 기본세율[25]이 2012년 4월부터 24%로 인하되고, 2013년 4월에는 23%, 2014년 4월에는 22%로 추가 인하될 예정임

○ 과거 예산안에 따르면 영국은 2014년 4월까지 법인세율을 23%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기업의 성장과 투자촉진을 위해 세율을 1%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함

○ 법인세율이 예정대로 인하될 경우, 영국은 G-7 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중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이자 G-20 국가 중 법인세율이 네 번째로 낮은 국가에 해당됨[26]

25) 기본세율은 과세소득이 150만파운드 이상인 경우 적용됨. 과세소득이 30만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소규모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과세소득이 30만~150만파운드 사이인 경우 특정 계산식을 통해 단계적으로 증가된 세율이 적용됨

26) G-7 및 G20 국가의 2011년 기준 법인세율

구분		국가	세율
	G-7	미국	35%
		캐나다	16.5%[1)]
		영국	26%
		독일	15.825%[2)]
		프랑스	34.4%
		이탈리아	27.5%
		일본	30%
G-20		유럽연합	N/A
		터키	20%
		남아프리카공화국	28%
		사우디아라비아	20%
		멕시코	30%
		브라질	25%
		아르헨티나	35%
		호주	30%
		러시아	20%
		대한민국	22%
		중국	25%
		인도네시아	25%
		인도	30%

주: 1) 10~16%의 지방세가 추가로 부과됨
2) 14~17%의 지방세가 추가로 부과됨
자료: OECD Statistics 및 IBFD

❑ 2012년 1월 1일부터 단기부채(short-term chargeable liabilities)에 적용되는 은행세가 인상될 예정임

○ 영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은행의 단기부채 및 장기부채에 대해 은행세를 부과하기 시작함

○ 2012년 1월 1일부터 단기부채에 적용되는 은행세율이 0.075%에서 0.088%로 인상될 예정이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0.105%가 적용될 예정임

❑ 지정된 기업지구(Enterprise Zone) 내 공장 또는 설비시설에 투자하는 상사기업(trading company)에 대해 첫해 연도에 한해 100%의 자산공제(capital allowance)가 허용될 예정임

○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은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나, 투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그 지출비용의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할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자산공제라 함

나.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등 소득세 개정

❑ 2013년 4월부터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5%로 인하될 예정임

○ 영국은 2011년 4월부터 15만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을 신설한 바 있음

- 50% 최고세율 신설 이후 최고세율의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부의 해외유출이 발생한다는 우려와 반발이 지속되어 왔음

○ 영국은 2011-2012 과세연도의 과세소득신고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 4월부터 최고세율을 50%에서 45%로 인하할 것을 결정함

❑ 2013년 4월부터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42.5%에서 37.5%로 인하될 예정임

○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0%, 32.5%, 42.5%의 세율로 누진과세됨

- 0파운드~3만 5천파운드: 10%
- 3만 5,001~15만파운드: 32.5%

- 15만 1파운드 이상: 42.5%

❑ 2012년 4월부터 40%의 높은 세율(higher rate)이 적용되는 과세소득 구간의 하한이 낮아지고, 65세 이하 납세자의 기본소득공제가 인상될 예정임

○ 현재 영국은 3만 5천파운드 초과 15만파운드 미만의 과세소득 구간에 대해 40%의 높은세율(higher rate)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과세소득 구간의 하한이 2012년 4월부터 3만 4,370파운드로 인하될 예정임

○ 또한 65세 이하 납세자의 기본소득공제가 현행 7,475파운드에서 8,105파운드로 인상될 예정임

❑ 2012년 4월부터 영국 거주자 중 '영국에 주소가 없는 자(non-UK domiciled individual 또는 non-dom)'가 송금주의 과세제도(remittance basis taxation)를 선택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이 연 5만파운드로 인상될 예정임

○ 영국에 주소가 없는 자는 선택에 의해 영국 내로 송금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될 수 있으며, 이를 송금주의 과세제도(remittance basis taxation)라 함

- 영국에 주소가 없는 자로서 ① 최근 14년 중 12년 이상을 영국에서 체류한 자 또는 ② 최근 9년 중 7년 이상을 영국에서 체류한 자만이 선택에 의해 송금주의 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영국에 주소가 없는 자가 송금주의 과세제도를 선택할 경우, 연 3만파운드의 비용(remittance basis charge, RBC)을 부담해야 함

○ 2012년 4월 2일부터 RBC가 연 3만파운드에서 5만파운드로 인상됨

❑ 2012년 4월부터 영국에 주소가 없는 자(non-dom)가 영국 내에서 요건을 충족한 특정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영국 내로 송금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임

다. 토지인지세 인상 · 신설 등 간접세 개정

❑ 2012년 4월부터 부가가치세의 사업자등록(registration) 및 등록취소(deregistration) 기준금액이 인상될 예정임

- ○ 사업자등록 기준금액(registration threshold): 7만 3천파운드 → 7만 7천파운드
- ○ 등록취소 기준금액(deregistration threshold): 7만 1천파운드 → 7만 5천파운드
- ○ EU 역내 국가로부터의 취득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등록취소 기준금액: 7만 3천파운드 → 7만 7천파운드

❑ 2012년 3월 21일부터 2백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고가주택(high-value residential properties)의 취득에 대해 토지인지세(stamp duty land tax, SDLT)가 인상 또는 신설됨

- ○ 개인이 2백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경우 부과되던 SDLT 세율이 5%에서 7%로 인상될 예정임
- ○ 자연인이 아닌 자(non-natural persons)가 2백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거래에 대해 15%의 SDLT가 새롭게 부과될 예정임

라. 스위스와의 조세협약 효력 발생

❑ 2012 재정법이 통과할 경우, 영국이 지난 2011년에 스위스와 체결한 조세협약(tax agreement)에 대한 효력이 발생할 예정임

- ○ 영국과 스위스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스위스 은행 무기명 계좌(undeclared account)에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조세협약을 2011년 10월 6일에 체결한 바 있음[27)]

27) 자세한 내용은 「주요국의 조세동향 11-22호」(2011. 11)를 참고하기 바람

6. 오스트리아 2012 긴축재정안

[조세동향 12-03호]

❑ 오스트리아 의회는 오스트리아 연방정부가 제출한 5개년도 긴축재정안을 2012년 2월 10일에 승인함

○ 2012 긴축재정은 재정적자를 GDP의 3%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는 유로존 협약을 준수하기 위함임

- 오스트리아의 재정적자는 2010년 GDP의 4.4%였으며, 2011년에는 3.4%로 감소하였음

❑ 2012 긴축재정에는 약 70억유로의 세수를 창출하기 위한 세제개편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2012 긴축재정에 포함된 주요 세제개편에는 부정기적 급여에 대한 부가세(surcharge) 부과, 연구개발 프리미엄(R&D premium)의 한도 인상, 그룹과세제도(group taxation) 및 부동산 자본이득세제의 개정,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도입 및 스위스와의 조세협정(tax agreement) 체결이 있음

가. 부정기적 급여에 대한 부가세 부과

〈표 Ⅱ-2〉 부정기적 급여에 대한 부가세 세율

(단위: 유로, %)

과세소득 구간	세율
~ 620.00	0.00
620.01 ~ 25,000.00	6.00
25,000.01 ~ 50,000.00	27.00
50,000.01 ~ 83,333.00	35.75
83,333.01 ~	약 50(일반소득세율)

자료: Ernst&Young, "International Tax Review," No. 03/2012, 12 March 2012

❑ 휴가비, 크리스마스 상여와 같은 부정기적 급여에 부가세(surcharge)가 부과될 예정임

○ 현재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6%의 단일세율로 소득세가 과세되나,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이와 같은 급여에 대해 누진적 부가세가 추가로 과세될 예정임

나. 연구개발 프리미엄의 한도 인상

❑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구개발 프리미엄(R&D Premium)의 한도가 연간 10만유로에서 100만유로로 인상됨

○ 오스트리아는 일정요건을 충족한 연구개발 활동의 일정비율을 연구개발 프리미엄(R&D premium)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현재 연구개발 프리미엄은 연구개발 비용의 10%(2011년 이전 8%)로 산정되며, 연구개발 비용은 연간 10만유로를 한도로 함

○ 2012 긴축재정의 승인으로 연구개발 비용의 한도가 10만유로에서 100만유로로 인상될 예정임

- 연구개발 비용의 한도가 인상되는 대신 연구개발 프리미엄의 신청자격 요건은 강화될 계획임

다. 그룹과세제도 공제 가능 손실액의 한도 설정

❑ 오스트리아의 현 그룹과세제도(group taxation)에 따르면 그룹 내 해외기업(foreign group members)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그룹 전체이익에서 공제 가능함

○ 다만, 공제 가능한 손실액은 그룹 내 해외기업의 손실발생액을 내국세법에 따라 재계산한 금액이며, 경우에 따라 이 금액은 (외국세법에 따라 산정된) 실제 손실발생액보다 높을 수 있음

❑ 공제 가능한 손실액이 실제 손실발생액보다 높아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012 긴축재정은 그룹과세제도의 공제 가능 손실액에 한도(conversion cap)를 설정함

❑ 손실액의 한도를 실제 손실발생액으로 설정함으로써, 납세자는 ① 내국세법에 따라 재계산한 손실액과, ② (외국세법에 따라 산정된) 실제 손실발생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됨

라. 부동산 자본이득세의 보유기간 요건 폐지

❑ 2012 긴축재정 승인으로 2012년 4월 1일부터 부동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부동산 양도로부터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과세될 예정임

- ○ 현 자본이득세제에 따르면 취득 후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 시 자본이득세가 면제됨
- ○ 긴축재정 승인으로 2002년 3월 3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보유기간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이러한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5%의 단일세율로 자본이득세가 과세될 예정임

마. 금융거래세 도입

❑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는 2014년까지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를 도입할 계획임

- ○ 금융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오스트리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오스트리아에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두 거래 당사자 모두 납세의무를 지며, 오스트리아 은행이 금융거래세를 원천징수할 계획임
- ○ 과세소득 및 세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아니함

바. 스위스와의 조세협정 체결

❑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거주자가 보유하는 스위스 금융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해 25%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세협정(tax agreement)을 스위스와 체결할 예정임

○ 오스트리아가 스위스와 체결할 조세협정에 따라 스위스 금융기관은 과거 오스트리아 거주자가 보유해 온 스위스 미신고계좌에 대해 조세협정을 소급적용하여 산정된 세금을 오스트리아 과세당국에 일괄납부(lump-sum tax payment)해야 함

- 독일과 스위스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세협정을 지난 2011년 11월에 체결한 바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독일-스위스 간 조세협정과 유사한 내용의 조세협정을 스위스와 체결할 계획임

7. 이탈리아 법인세제 개정

가. 자기자본공제제도

[조세동향 12-01호]

❑ 이탈리아 정부는 2011년 12월 5일에 경기부양을 위해 자기자본공제제도(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ACE)를 도입하는 시행령(decree)을 발표함

○ 자기자본공제제도는 2005년에 IMF에서 이미 제안한 제도임

○ 이 제도는 ① 자기자본을 통한 신규투자 활성화와 ② 타인자본을 통한 신규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감세효과로 인한 지나친 차입 방지를 목표로 함

❑ 공제금액: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신규투자의 경우 그 조달한 자기자본 금액에 일정한 수익률(3%)을 곱한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함

○ 투자금액에 곱할 일정한 수익률은 평균공채이자율(현행 3%로 산정됨)을 근거로 산정함

나. 이월결손금 규정

[조세동향 12-02호]

❑ 이탈리아 과세당국은 2006년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도 변경된 공제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하는 시행령(Law Decree 98/2011)을 2012년 1월 25일에 개정하여

공포함

○ 개정된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됨

❑ 변경 전 규정에 따르면, 이월결손금은 5년 간 이월하여 미래에 발생할 과세소득을 공제할 수 있음

○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는 없음

○ 다만, 사업개시 후 첫 3년 동안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음

❑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 규정이 폐지되고 당기 과세소득의 80%에 해당되는 금액만 공제됨

○ 하지만 이 규정이 2010년 이전에 이미 발생된 이월결손금에도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 여부가 불확실함

❑ 시행령(Law Decree 98/2011)에 따르면, 2010년 12월 31일 현재 공제되지 않고 남은 이월결손금 잔액은 추가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8. 프랑스 2012 재정법

[조세동향 12-02호]

❑ 프랑스 의회는 2011년 12월 29일에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인상이 포함된 2011년 재정법 개정안과 2012년 재정법을 승인함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가세 도입 등 법인세 개정

❑ 매출액이 250만유로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33.33%에서 36.1%로 법인세

율을 인상함

○ 인상된 법인세율은 2011년과 2012년 과세연도만 적용됨

❑ 주식취득을 위해 차입한 금융비용의 공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식취득을 위해 차입한 금융비용은 공제되지 않음

○ 공제요건 : 그 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실제로 ① 취득회사나 동일한 경제실체에 속하고 프랑스에서 설립된 회사에 의해서 내려져야 하고, ② 인수대상회사가 취득회사나 그의 특수관계자에 의해서 통제되어짐을 입증하여야 함

❑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주식을 거래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단기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연이 폐지됨

○ 현행 규정 : 단기자본이득의 경우 과세가 이연됨

○ 단기의 자본이득 : 보유기간 2년 이내에 거래로 인해 발생한 자본이득

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가세 도입 등 소득세 개정

❑ 과세소득이 25만~50만유로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3%의 부가세(surtax)가 부과되고 과세소득이 50만유로를 초과하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4%의 부가세가 부과됨

○ 이 부가세는 2011년부터 적용되며 재정적자가 회복될 때까지 지속됨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상함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9%에서 21%로 인상됨

○ 비거주자에 대한 표준 원천징수세율은 25%에서 30%로 인상됨

○ EU 회원국 등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경감 원천징수세율은 19%에서 21%로 인상됨

❑ 8년간 보유한 유가증권 중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됨

○ 특정 요건은 아래와 같음

① 보유자와 그의 특수관계자가 합쳐서 최소 10%의 지분율을 8년간 보유
② 유가증권 발행 회사는 EU 안에서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포트폴리오투자를 위한 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됨
③ 주식의 처분으로부터 얻은 이득의 최소 80%를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등에 재투자하여야 함
④ 납세자나 그 납세자의 가족이 5년 동안 유가증권 발행 회사의 임원 등이 되어서는 아니 됨

다. 법인세 부가세 도입에 관한 과세당국의 적용지침

[조세동향 12-05호]

❑ 프랑스 과세당국은 개정재정법 2011에서 도입된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surtax)의 적용 대상과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하는 지침(comments)을 발표함
- ○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 : 총매출액이 2.5억유로를 초과하는 회사(company)를 대상으로 해당 회사 법인세에 대해 5%를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임
- ○ 이 부가세의 도입 취지: 재정적자를 GDP의 3%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함
- ○ 이 부가세는 2011년 12월 3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과세연도가 종료되는 회사에 대해 적용됨

❑ 이 적용지침에 따르면,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의 적용 대상은 법인(comporation, sociétés anonymes), 유한파트너십(sociétés en commandite par action) 및 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sociétés à resposabilité limitée)을 모두 포함함
- ○ 외국회사의 프랑스지점이 법인형태로 설립된 경우에도 이 부가세가 적용됨

❑ 또한 매출액은 금융거래로 인한 수익, 비경상적인 거래로 인한 수익, 특정 배당소득 및 계열사간 거래로 인한 매출 등을 포함하지 않음
- ○ 비경상적인 거래에는 부동산의 매매가 포함될 수 있음
- ○ 다만, 매출액에는 국외에서 수행되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은 포함되지 않음

❑ 부가대상이 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이 공제된 이후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임

9. 헝가리 금융거래세법

[조세동향 12-05호]

❑ 헝가리 정부는 2012년 5월 11일에 금융거래세법(Financial Transaction Levy)을 의회에 제출함

○ 금융거래세법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임

❑ 금융거래세는 금융거래 제공자(financial transaction providers)로서 본점 또는 지점이 헝가리에 있는 자에게 부과될 예정임

❑ 금융거래세는 금융거래 제공자가 과세대상 거래를 수행하거나 양도인(transferor)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과됨

○ 과세대상 거래는 다음의 거래를 포함함

- 금전의 이전
- 직접 이체 또는 자동 이체
- 양수인(beneficiary)에 의해 개시된 양도인의 지급거래
- 현금의 예치, 인출 또는 송금
- 신용장 발급
- 수표 지급

○ 이외에도 금융거래 제공자가 수행한 거래로서 양도인의 계좌 잔액을 감소시키는 거래에는 금융거래세가 부과됨

❑ 다음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 ○ 국립은행이 수행하는 거래 및 재무부가 수행하는 일부 거래
- ○ 거래당사자 쌍방이 모두 금융거래 제공자인 거래
- ○ 단일의 금융거래 제공자가 수행한 거래로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일한 거래
- ○ 안전계좌(security accounts) 거래

❑ 금융거래세는 거래금액(value of transaction)에 대해 0.1%의 세율로 부과될 예정임

- ○ 외화거래의 경우 거래일에 국립은행이 공시한 환율을 적용하여 포린트(HUF)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봄

❑ 금융거래세가 부과된 자는 거래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금융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Ⅲ 아시아/오세아니아

1. 싱가포르 2012 예산안

[조세동향 12-03호]

❑ 싱가포르 정부는 2012년 2월 1일에 국내 생산성향상과 중소기업 및 저소득근로자, 퇴직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2012년 예산안을 발표함

- ○ 2012 예산안은 경기부양이 아니라 싱가포르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됨
-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싱가포르인의 노동력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세를 개정하고자 함
- ○ 2012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등 법인세 개정

❑ 싱가포르 정부는 중소기업에게 1회성 현금지원을 할 예정임

- ○ 현금지원액은 2012년 과세소득의 5%이고, 5천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함
- ○ 지원대상은 2012년 회계기간 동안 1명 이상의 피고용인에 대해 국민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 회사부담분을 납부한 법인임

❑ 개보수(renovation or refurbishment) 비용에 대한 공제한도를 증액할 예정임

- ○ 사업장의 개·보수작업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공제되지 않지만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8년 2월 16일에서 2013년 2월 15일까지 공제 가능하도록 함[28)]
  - 한도는 3년을 기준으로 15만싱가포르달러임
- ○ 2012 예산안에는 사업장 개·보수비용에 대한 공제한도를 15만싱가포르달러에서 30만싱가포르달러로 인상함
  - 한도는 3년을 기준으로 함

28)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싱가포르』, 2011.

❑ 1년 즉시상각이 가능한 자산가액을 5천싱가포르달러로 인상하여 즉시상각자산의 범위를 확대함

❑ 2배 공제(200% deduction)를 적용할 수 있는 국제화 지출(internationalization expenditure)에 대상이 되는 적격비용을 추가함

- ○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2012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 ○ 추가되는 적격비용은 해외 사업개척을 위한 여행비용, 해외 투자연구를 위한 여행비용, 해외 무역박람회(trade fair)에 참가하기 위한 비용, 국내 무역박람회(trade fair)에 참가하기 위한 비용을 포함함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적격투자에서 발생하는 투자이익은 과세하지 않음

- ○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2012년 6월 1일부터 적용됨
- ○ 적격투자의 투자이익이란, 처분 이전에 최소 24개월 이상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한 투자이익임

나. 기본공제 및 장애자공제의 인상 등 소득세 개정

❑ 소득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소득공제 중 기본공제(Earned Income Relief, EIR)와 장애자공제(Handicapped EIR)가 〈표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상됨

〈표 Ⅲ-1〉 기본공제와 장애자공제

(단위: 싱가포르달러)

연령	기본공제(SGD)		장애자공제(SGD)	
	현재[1]	예산안	현재[1]	예산안
55세 미만	1,000	1,000	2,000	4,000
55세 이상~60세 미만	3,000	6,000	5,000	10,000
60세 이상	4,000	8,000	6,000	12,000

주: 1)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싱가포르』, 2011. 내용을 정리한 것임

다. 특별고용지원금 등 조세 혜택 개정

❑ 특별고용지원금(Special Employment Credit, SEC)을 강화함

- ○ SEC는 고용주가 월급여 3천홍콩달러 이하인 50세 이상의 싱가포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 임금의 8%를 고용주에게 지급하는 제도임
- ○ 근로자의 월급여가 3천싱가포르달러에서 4천싱가포르달러인 경우에 지급금은 감소되기 시작하여 4천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은 없음[29)]

❑ 생산성 및 혁신지원제도(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PIC)를 강화함

- ○ 생산성향상 지원제도에서 현금지급(Cash payout) 비율을 30%에서 60%로 인상하고 2015년까지 현금지급 혜택을 연장함
- ○ 연단위의 현금지급 공제신청을 분기별로 가능하도록 함

❑ 합병 등 조직재편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17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완료된 적격 합병 등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에 대하여 200% 공제를 허용함

- ○ 적격합병 등에 대한 거래비용 200% 공제는 연간 10만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함

❑ 집합투자공제(Integrated Investment Allowance, IIA)제도를 도입하여, 승인된 프로젝트를 위하여 해외의 생산시설에서 고정자본지출에 대한 추가적인 공제를 허용함

- ○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2012년 2월 17일 이후에 발생하는 지출분부터 적용함

❑ 선박부문혜택(Maritime Sector Incentive, MSI)을 받고 있는 적격 선박 운영자와 선박리스회사에 대해 특정소득에 대한 자동적인 과세면제를 허용함

- ○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2011년 6월 1일부터 소급되어 시행됨
- ○ 특정소득은 선박의 처분이익과 새로운 건설계약과 건설 중인 선박에 대한 처분이익임

29) 〈http://www.sec.gov.sg/sec2012.html〉

라. 여행객에 대한 GST 면제 등 GST 개정

❑ 투자등급의 금과 귀금속의 수입 및 공급은 면세가 됨

○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 GST 여행객 환급 시스템을 국제적인 크루즈 승객들에게 확대할 예정임

○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국내 여행객이 해외에 체재한 시간이 48시간 이내이고, 600싱가포르달러 미만인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150싱가포르달러에 해당하는 GST수입면제가 적용됨

○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마. 담배생산 부과금의 인상 등 기타조치 개정

❑ 담배생산에 대한 부과금을 10%에서 20%로 인상함

○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2012년 2월 17일부터 시행됨

❑ 운반기구에 대한 이전비용을 11싱가포르달러로 하고 그 외에 추가적인 이전비용의 부과는 폐지함

○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201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됨

❑ 녹색운반구보조금(Green Vehicle Rebate, GVR)을 2014년까지 연장하고, 승용차와 택시에 대한 GVR시스템을 탄소배출에 근거한 운반구 체재(Carbon Emissions-based Vehicle Scheme, CEVS)로 바꿈

❑ 노령사회보장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에 대한 50세 이상의 자영업자의 본인부담률을 9%에서 9.5%로 인상함

○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근로자에 대한 CPF의 회사 부담비율을 〈표 Ⅲ-2〉와 같이 인상할 예정임

○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됨

〈표 Ⅲ-2〉 CPF의 부담률

(단위: %)

연령	고용주	근로자
50세 이상 ~ 55세 미만	14	18.5
55세 이상 ~ 60세 미만	10.5	13
60세 이상	7	7.5

2. 일본의 소비세 인상 법안

[조세동향 12-06호]

❑ 일본은 소비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세 증세 법안을 2012년 6월 2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함[30]

○ 노다 수상은 참의원에서의 심의를 거쳐, 9월 8일까지의 금번 회기 중에 성립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함

○ 참의원의 가결 내용을 살펴보면 총 478표 중 찬성 363표, 반대 96표였음

❑ 개정법안의 내용은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2014년 4월부터 8%로, 2015년 10월부터 10%로 두 단계 인상하는 것임

○ 증액되는 소비세를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연금, 의료, 사회보장급여 및 출산 감소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함

30) 일본 국회는 중의원, 참의원의 양원제로 구성되고, 법안은 기본적으로 중·참의원을 모두 통과해야 법률로 확정됨. 그러나 참의원이 수정 혹은 부결한 법안이라도 중의원 출석의원 3분의 2의 가결로 확정시킬 수 있음

❑ 일본 정부안에 포함되었던 소득세율의 인상이나 상속세법의 개정 등에 대해서는 3당 합의 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보류하고 금년도 중에 필요한 법제상 조치를 강구하기로 결의함

○ 정부안에 포함된 소득세법의 내용은 5천만엔을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2015년 이후에 45%로 인상하는 것임

- 현행은 과세소득 1,800만엔을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40%를 적용하고 있음

○ 정부안에 포함된 상속세법의 내용은 기초공제를 줄이고 세율을 높이는 것임

- 현행 상속세 기초공제의 계산식인 "5천만엔 + 1천만엔 × 법정상속인 수"를 "3천만엔 + 600만엔 × 법정상속인 수"로 개정하여 기초공제를 줄임
-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인 50%를 55%로 인상함
- 상속 시 정산과세제도를 적용하는 증여자의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함
- 201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 증여 시에 적용함

○ 정부안에 포함된 조세특별조치법의 내용은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율을 완화하고 상속 시 정산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수증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임

- 20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수증자로 하는 경우 증여세의 세율구조를 완화함
- 상속 시 20세 이상의 손자도 받을 수 있도록 정산과세제도 대상을 확대함

3. 중국의 소프트웨어 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 조치

[조세동향 12-06호]

❑ 중국 국세청은 2012년 4월 20일에 소프트웨어와 집적회로(IC) 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개정하는 국세청 행정해석(Caishui 2012 No.27)을 발표함

○ 이번 행정해석은 관련 행정해석(Caishui 2008 No.1)을 폐지시키고, 다른 행정해석(Guofa 2011 No.4)을 개정하는 조치이며, 2011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에 적용됨

❑ 이번 행정해석은 특정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감면, 부가가치세 환급, 가속상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 요건 외에 다양한 요건(매출액 기준, 인적교육 수준 등)을 갖추어야 함

가. 소프트웨어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혜택

❑ 특정기업인 경우에 2011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과세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법인세(Enterprise Income Tax, EIT)를 2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 1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

- ○ 일반적인 경우 법인소득세율이 25%이므로 1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 경감의 혜택이 됨
- ○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인세율을 10%로 더 낮춤

❑ 혜택조치를 받게 되는 특정기업은 다음과 같음

- ○ 폭 0.8마이크론 이하의 집적회로(IC)를 제조하는 기업
- ○ 폭 0.25마이크론 이하의 집적회로(IC)를 제조하거나 IC산업에 80억위안 이상을 투자한 10년 이상인 기업
  - 단, 10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함
- ○ 중국에 새롭게 설립된 소프트웨어와 집적회로(IC) 기업으로 관련 정부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나. 3% 초과 부가가치세의 환급 혜택

❑ 소프트웨어와 집적회로(IC) 산업에 종사하는 특정기업은 전체 납부 부가가치세의 3%를 초과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청구할 수 있음

- ○ 이 조치는 이전의 행정해석(Gaishui 2011 No.100)에 따른 것임
- ○ 일반적인 경우에 부가가치세율은 17%임

❑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연구개발 활동이나 사업 확장을 위하여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음

다. 가속상각의 허용 등 기타 혜택

❑ 집적회로(IC) 디자인 기업이나 특정 소프트웨어 기업과 IC기업에서 발생하는 종업원 훈련비용은 법인세 계산과정에서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됨

❑ 고정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구입하는 소프트웨어나 집적회로(IC) 제품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는 가속상각이 가능함

- ○ 구입한 소프트웨어는 2년으로 가속상각 혹은 감모상각이 허용됨
- ○ 집적회로(IC) 제품생산을 위한 기계는 3년으로 상각될 수 있음

4. 홍콩 2012-13 예산안

[조세동향 12-03호]

❑ 홍콩 정부는 2012년 2월 1일에 이윤세와 소득세의 환급을 포함하는 2012-2013 예산안을 발표함

- ○ 홍콩은 2011년에 667억홍콩달러의 재정흑자를 기록했음
- ○ 예산안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지원과 경기부양에 초점을 두고 있음
- ○ 2012-2013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이윤세 등에 대한 환급 예정

❑ 홍콩 정부는 2011-12 과세연도에 결정된 이윤세(profits tax), 근로소득세(salaries tax), 개인별 과세액(personal assessment) 중 75%를 1만 2천홍콩달러를 한도로 환급할 예정임

- ○ 재산세는 환급대상이 아니지만, 임대소득을 개인별로 결정하는 과세액에 포함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됨

○ 이윤세에 대한 환급대상에 법인도 포함되므로 이윤세를 납부하는 법인도 혜택을 받게 됨

- 이 경우 법인별로 한도가 적용되는 것임

○ 근로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단일(single)로 한 경우에는 개인별로 한도가 적용되고, 합산(couple)으로 한 경우에는 결합단위별로 한도가 적용됨

○ 이윤세와 근로소득세를 따로 납부하는 납세자는 세목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별로 과세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개인별로 결정된 과세액에 근거하여 환급됨

○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환급 시기는 2012년 7월 말경이 될 것으로 예상됨

나. 소득세에 적용하는 기본 공제액 등의 증가

❑ 소득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공제액이 〈표 Ⅲ-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항목에서 인상됨

〈표 Ⅲ-3〉 소득세 공제액 비교표

(단위: 1천홍콩달러)

공제 항목		현재 (2011-12)	예산안 (2012-13)
기본공제		108	120
기혼자공제		216	240
홀부모공제		108	120
자녀공제	1~9세	60	63
	출생연도 추가자녀공제	60	63
부양 형제/자매공제		30	33
부양 부모/조부모공제	60세 이상, 장애인	36	38
	55~59세	18	19
추가 부양 부모/조부모공제[1]	60세 이상, 장애인	36	38
	55~59세	18	19
장애인공제		60	66

주: 1) 추가 부양 부모/조부모공제는 납세자와 동거한 경우에 해당함

자료: 홍콩국세청, 〈http://www.ird.gov.hk/eng/tax/budget.htm〉

다. 주택대출이자에 대한 공제기한 연장 등 기타 개정

❑ 부모 등에 대한 거주 간호시설 비용(elderly residential care expenses)공제의 한도를 현재 7만 2천홍콩달러에서 7만 6천홍콩달러로 인상함

- ○ 거주 간호시설 비용공제는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조부모나 장애를 가진 부모/조부모에 대한 거주 간호시설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 하는 소득공제임

❑ 주택대출이자에 대한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함

- ○ 주택대출이자의 공제한도는 10만홍콩달러임

❑ 강제성 공적기금(mandatory provident fund)의 의무적립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인상함

- ○ 홍콩은 강제성 공적기금(mandatory provident fund)의 의무적립액에 대하여 연금공제를 하고 있는데, 공제한도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임
- ○ 현재 공제한도인 1만 2천홍콩달러는 2012-13에 1만 4,500홍콩달러로, 2013-14에 1만 5천홍콩달러로 인상할 계획임
- ○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2012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2012-13에 사업등록비용(business registration fees)을 면제함

5. 뉴질랜드 2012 예산안

[조세동향 12-06호]

❑ 뉴질랜드 정부는 예산안에 포함되었던 세법을 2012년 5월 29일에 개정함

❑ 세법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은 세 종류의 세액공제를 폐지, 저소득층을 위한 과세소득 면제 도입, 가축에 대한 평가 규정 변화임

가. 9,880뉴질랜드달러 이하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폐지

❑ 폐지된 세액공제는 9,880뉴질랜드달러 이하의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아이돌보기와 가사도우미에 대한 세액공제, 아이들의 능동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음

○ 폐지 규정은 2012/13 과세연도부터 유효함

○ 폐지 목적은 시대가 변하여 해당 세액공제가 더 이상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므로 이를 통해 확보된 세수를 보다 필수적이고 직접적인 부분에 사용하기 위한 것임

❑ 아이들의 능동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폐지한 것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선호가 있었기 때문임

○ 아이들이 아이돌보기(baby-sitting)와 같은 비공식적인 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소득 신고를 면제하는 제도를 더욱 선호하기 때문임

- 고용주가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아이들의 과세소득 신고가 면제되어 환급도 되지 않음

나. 저소득층을 위한 과세소득 면제 도입

❑ 저소득층이 벌어들인 연간 2,340뉴질랜드달러 이하의 능동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면제함

○ 이 규정은 2012/13 과세연도부터 유효함

다. 가축에 대한 평가규정 변화

❑ 가축 평가 틀(scheme)로 알려진 'herd scheme'의 적용을 농부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폐지함

○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유효함

6. 호주 2012-13 예산안

[조세동향 12-05호]

❑ 호주 정부는 2012년 5월 8일에 2012-13 예산안을 발표함

○ 호주의 예산회기는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1일까지임

❑ 호주는 2012-13 예산에 15억호주달러의 흑자예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2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자원세(Minerals Resource Rent Tax)를 통한 세수증가를 가계(family) 및 기업(business) 전반에 분배하고자 함

○ 호주는 [그림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예산수지 적자를 기록해 왔으나, 2012-13 예산을 통해서 예산수지 흑자를 달성하고자 함

[그림 Ⅲ-1] 호주의 현금예산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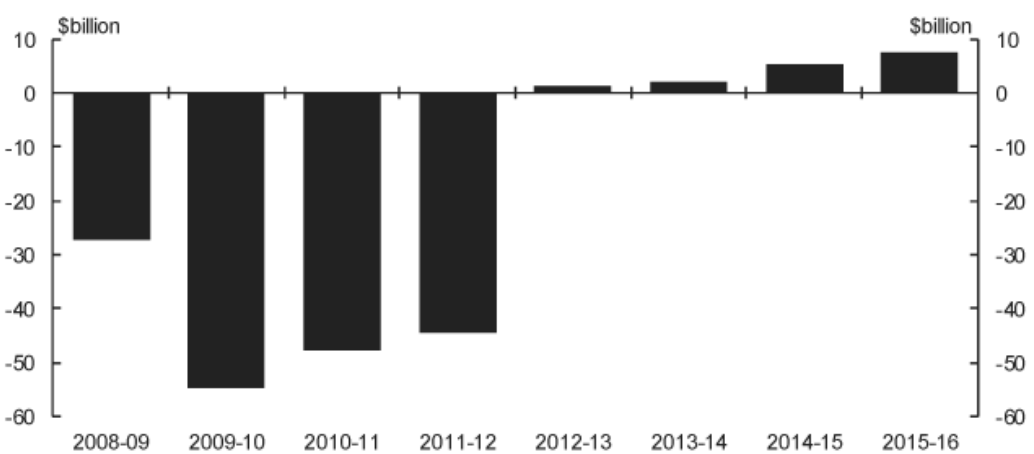

자료: 호주국세청 홈페이지, Budget Overview, 2012. 5. 8.

○ 호주 정부는 자원세를 통해 얻은 세수로 법인세율을 1% 인하하고자 하였으나, 의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여 가계와 기업에 분배하는 대체안을 선택함

- 가족에 대한 세제혜택(Family Tax Benefit Part A, FTA-A)을 통하여 가계에 대한 기본지급액을 증액하고 중등학교(secondary school)에 대한 지원금도 증액함

가. 중소기업 자산의 즉시상각 등 법인세 개정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산의 즉시상각을 허용함

○ 중소기업이 개별자산별로 6,500호주달러 미만인 자산을 구입한 경우 즉시상각을 허용하고, 자동차(motor vehicle)는 취득원가 중 5천호주달러를 즉시상각할 수 있도록 함

❑ 기업들이 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소급공제(loss carry-back)를 허용함

○ 2012-13 예산에 이월결손금 소급공제를 도입하고, 2013-14에 소급공제기간을 2년으로 확대할 예정임

❑ 관련기업의 대손상각공제를 폐지함

○ 이에 따라 채무면제이익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나. 비거주자에 대한 자본이득 50% 감면 등 소득세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해 소득세 과세구간을 통합하여 소득세율을 인상함

○ 비거주자에 대하여 8만호주달러까지의 과세소득에 대한 세율을 32.5%에서 33%로 인상함

-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8만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로 과세됨

❑ 비거주자에 대한 자본이득 50% 감면을 폐지함

○ 호주는 비거주자가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50%의 감면을 실시하였으나, 이번 예산안에 의하면 이를 폐지함

- 2012년 5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일시적 노동 유동성 프로그램(Seasonal Labour Mobility Program)에 참여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은 15%의 단일세율로 과세할 예정임

❑ 장거리거주(Living Away from Home)에 대한 공제의 범위를 축소함

○ 장거리거주공제는 12개월을 최대기간으로 하며, 실질적인 거주지 외에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제2의 거주지를 가진 사람이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함

다. 원천징수세율 인상 등 원천징수세 개정

❑ 관리투자신탁(Managed investment trust)이 지급하는 호주소득의 완납적 원천징수세율을 7.5%에서 15%로 인상할 예정임

○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라. 담배에 대한 관세면제범위 축소

❑ 해외 여행객에 대한 내국 관세면제범위가 담배 250개 혹은 250그램에서 50개 혹은 50그램으로 축소될 예정임

○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마. 개인에 대한 과세소득 면제범위 증가 등 기타조치

❑ 금융기관이 역외에서 차입을 하고 지불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폐지

○ 외국 금융기관의 호주 자회사나 호주 지점에 도움이 되는 조치임

❑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가 종결된 후에도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결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함

○ 이는 장기간에 걸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의 불리한 점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임

○ 해당 기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지분테스트(ownership test)나 동질성테스트(same business test)를 적용하지 않음

❑ 개인에 대한 과세소득 면제범위를 1만 8,200호주달러로 증가시킬 예정임

○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세율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한 조치임

○ 현재의 과세소득 면제액은 6천호주달러인데, 이를 2012-13에 1만 8,200호주달러로 증가시키고 2015-16에 1만 9,400호주달러로 추가 증액시킬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2만 1천호주달러까지 증가시킬 예정임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2년 제1호

2012년 6월 22일 인쇄
2012년 6월 29일 발행

발행인 조 원 동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 쇄 일지사

Ⓒ 한국조세연구원 201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